제418회국회
(정기회)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호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임 시 회 의 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23일(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
6.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8.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
11.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
1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
13.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
1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1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
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
2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
30.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3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3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상정된 안건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 ····· 3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 ····· 3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 ····· 3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 ····· 4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 ····· 4
6.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 4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 4
8.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 ····· 4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 ····· 4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 ····· 4
11.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 ····· 4
1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 ····· 4
13.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 ····· 4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 ····· 4
1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 4
1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 ····· 4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 ····· 4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 ····· 4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 ····· 4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 ····· 4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 4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 ····· 4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 ····· 4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 ····· 4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 ····· 4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4
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 ····· 4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 ····· 4
2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 ····· 4
30.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 4
3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 5
3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 5

(14시02분 개의)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금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본 위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국방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
6.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8.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
11.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
1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
13.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
1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1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
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
2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
30.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3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3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2항까지 3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그리고 제2항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과 2항, 김성원·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개정안에 공통사항이 있어서 병합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및 공통사항인 군인가족의 날 지정 관련된 것입니다.

총괄 부분인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군인가족의 날 지정 그리고 한기호 의원님께서는 군인가족의 날 이외에 군 매점 상품 등에 대한 재판매 금지 규정 신설,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군인가족의 날 지정과 관련된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군인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군인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군인가족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 등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제시해 드린 고려사항과 동 개정안에 동의하는 국방부 의견을 참고하셔서 그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님이 제시한 한기호 의원안 제11조의2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 및 운영하는 자에게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및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대하여는 잦은 전학과 격오지에서 성장하는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군인들의 중장기 복무를 독려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 매점 상품 등에 대한 재판매 금지 규정 신설 관련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매 행위는 이용 대상을 군인 및 군인가족 등으로 한정해 놓은 군인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시장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재판매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재판매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방부도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먼저 군인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과 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의견에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차관님, 실질적으로 군인가족의 날 제정을 하면 군인이나 가족들한테 뭘 해 줄 수 있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현재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모범 군인가족들을 부대별,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초청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어떤 초청 행사 또 국방부가 주도하는 초청 행사에 초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정례화되면 다양한 혜택들을 만들어서 군인가족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런데 저 뒤에 현역이신 분이 누가 있어요? 현역이신 분 없나, 한 분도? 군인들이 진짜 좋아하나? 안 물어보고 오셨구나.

그다음 두 번째,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군인 자녀의 자율형 공립학교가 사실 지금 한민고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제가 알기로 한민고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방부의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분들, 물론 거기에 전직 국방부장관도 계시고 여러 분 계셨는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게 통과가 되면 국방부에서 얼마큼 지원할 역량과, 저는 또 하나 여쭤볼 게 의지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한민고 설립할 때 14년도 당시에 사실 국고 지원이 전체 들어간 게 한 850억 정도 되는데 350억 정도가 국고 지원이 됐고요. 호국장학재단도 사실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이거든요. 거기서도 한 200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한 70% 정

도는 사실 한민고 만들 때 지원이 됐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지적하신 영역은 이게 매년 연간 운영 예산이 한 60억 정도 드는 겁니다. 거기에 국방부가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업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또 교육부하고 다른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 지자체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부, 지자체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항목으로 지원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지금 예산 항목까지는 정확히 못 따졌는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원 항목 예산을.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뒤에서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보건복지관 김은성 국장입니다.

하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이 된다면 군인복지기금으로 기숙사 운영에 관한 것들을 국방부가 지원하게 되고요, 기숙사 건립은 해당 자치단체하고 교육부,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원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지금 국방부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앞으로 대략 한 세 개 정도를 더 만들려고 하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이것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동의하나요?

기재부 누가 오셨어요?

기재부가 안 된다면 안 되잖아.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아까 국방부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반대 안 하지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예, 교육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하에 잘 협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알겠습니다. 기재부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군인가족의 날 지정 관련해서는 물론 그 취지나 군인가족에 대해서 기념일을 제정해서 좀 더 예우하고 또 다양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은데, 현 국군의 날에 가족 대상 초청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국군의 날에 군인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겸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방부차관 김선호 별도로 군인가족을 특정하지는 않는데 다양한 이벤트 할 때 장병들하고 가족들이 다 포함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허영 위원 참여해서 하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허영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소방가족의 날, 경찰가족의 날, 각종 직역·직종의 공무원들 관련된 기념일들을 연차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군의 날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기념일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군의 날에 군인가족들을 예우할 수 있는 다양한 다채로운 그런 행사들을 겸해서 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오히려 국가유공자들의 보훈 정책을 더욱더 두텁고 넓게, 그렇게 하는 데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저는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민고 외에 지금 강원지역에서도 한민고와 비슷한 공립형 자율학교를 설립하고자 춘천하고 화천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평준화 지역에는 이러한 한민고와 같은 군인 자녀를 위한 공립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기준이 있는 모양이에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평준화 외 지역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춘천은 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립형 자율학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춘천고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립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바가 있고 그런데 군인 자녀를 위한 공립형 자율학교는 평준화 지역에 설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여러모로 대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오히려 약간 좀 차별적인 측면들이 있기도 하고, 물론 저도 고향이 양구여 가지고 일단 지역소멸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학교를 설립해서 지역소멸을 막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취지가 되는데 이게 춘천지역, 제가 지역구가 춘천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또한 약간 춘천지역에 사는 군인분들에게는 오히려 또 역차별이 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허영 위원님, 양구에 있는 군인들한테 가서 허영 위원님이 반대하셨다 그러면 안 되는데.

(웃음소리)

○허영 위원 반대는 아닌데 이게 지역적으로 또 전방지역 내지 접경지역 내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100%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사람도 군인가족 아이들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주에 하나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국방부가 한 세 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춘천시에 하는 것을 찬성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것은 교육방

침에 의해서 평준화 지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화천으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은 어디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좀 섭섭하시겠지만.

○임종득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군인가족의 날 지정과 관련되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허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기 소위에서 통과된다고 해 가지고 통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회의도 있고 또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언급됐던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논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 군인가족의 날 지정과 관련되어서 군인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현직 군인들이 얼마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직군과 관련되어 가지고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명확하게 논리가 있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좀 더 그 내용들을 정교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김성원 의원이 본래 자기 지역 자체가 연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천에서 군인들이 요구한 것하고 저도 지역에 군인들이 많으니까 지지난 주에 가서 실제로 현역 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까도 제가 차관님한테 질의한 게 '뭘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그냥 날만 지정하면 뭐 합니까? 해 주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게 같이 병행되도록, 날짜가 지정되면 그다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검토가 되어진 상태에서 좀 더 구체화된 제시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춘천이라든가 일부 평준화된 지역에서는 안 되고 했을 때 국방부에서는 만약에 이게 법으로 된다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익, 혜택들이 군인 자녀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 하는 문제 그다음에 과거에 시행을 해 봤던 그 시행착오 속에서 무엇을 보완하고 해 가지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 섞인 내용들이 보완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PX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쭉 나온 내용 중에 군인과 군무원들이 재판매 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얼마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사례들이 있는데 보면 판매원들 또는 이런 사람들이 물품을 받아서 외부에 유출한 사건들이 크게 보면 그 단위가 억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심각하네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어느 마트에서는 각종 건강식품, 화장품 이런 것들을 1억 9000만 원씩 사다가 이걸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데도 이런 예가 있고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밖에 가서 파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지금 파주에 있는 것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게 학교를 설립할 때 복지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왜 지원했느냐', 그래서 지금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물어본 것은 지금 3개를 더 만든다고 하면 그걸 다 지원하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고 기재부에서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기재부가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이건 현재 우리가 파주 한민고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부승찬 위원 아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뭘 또 이의 있다고 그러려고 해요.

○허영 위원 이의를 말씀 전에 드렸고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부승찬 위원 예, 제가……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말씀하세요.

○부승찬 위원 차관님, 군 매점 상품에 대한 재판매 금지와 관련해 저도 전적으로 수용 입장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재판매되는 사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를 들면 그것을 오픈마켓에서 하는 마켓 운영자들이 있거든요.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것을 좀 제재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인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개인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그런 부당한 행위는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데 따른 행정과 인사,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게 통과가 돼서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면 그런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데 지금 법률상에는 재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항이?

○국방부차관 김선호 현재는 그런 것이 돼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다른 법에는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다른 법에도 PX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판매를 했을 때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법이지만 그래도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타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율형 공립고 지원과 관련돼서 기재부에서 나오셨다는데 타 부처에서도 만일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교육부와 타 부처가 협의하면 그냥 다 들어 주는 겁니까?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그건 아니……

○부승찬 위원 그냥 국방부만 특별, 예외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는 건지 여기서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방교육교부금을 매년 내국세의 20% 정도를 내려주거든요, 교육청에.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부승찬 위원 그냥 원론적 입장만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또 국방부하고 교육부가 MOU도 체결했는데요. 이것은 먼저 사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승찬 위원 좀 우려스러운 점은 교육부 검토보고서에 보면 특별교부금 1억, 교육청 지원예산 1억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기타적으로 국방부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국방 예산이라기보다는 지방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국방부하고 교육청 간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방 예산에서는 현재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없고요.

○부승찬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결국은 교육부 특교 1억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예산 1억을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 법 하나 하더라도 정확히 해서 우리 군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국방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보건복지관입니다.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연초에 교육부와 국방부 간에 MOU 체결을 통해서 시도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교육부에서는 지역소멸이 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교육특구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학령인구에 있는 인구 중에서도 특별히 군인 가족의 경우에는 군인 아버지,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거꾸로 제안을 해 주신 건데요. 이 사업의 구도는 원칙적으로……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의 유형이 한 세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형도 있고요 자치단체 유형도 있고 저희처럼 군인 자녀를 위한 유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해당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가 먼저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고요. 그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예산과 기숙사를 설립할 수 있는 예산, 부지를 검토해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추천·건의를 하고 교육부가 요건에 맞는 학교를 일차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승인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학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 고등학교인데 이렇게 자립형 공립고등

학교로 전환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신설할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인근하고 경상도 인근이 있는데요. 그 학교들은 28년, 29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이미 시설 투자가 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설립하려고 있는데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학교를 신설하는 데 드는 굉장한 규모의 예산은 그렇게 소요치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각 지정된 학교에다가 교육부 예산 1억을 제시하고 교육청에서 1억을 또 추가로 제시하고 국방부에서는 기숙사 운영에 관한 예산 지원을 기금으로 하게 됩니다, 일반예산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 국방부하고 교육부는 한민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에 이식하기 위해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을 교육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승찬 위원 좌우지간요.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이해는 잘 안 돼요. 명확히 국방부가 아까 기금에서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면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만 해 주세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민고 기숙사 운영의 경우에도 기숙사 비용에 대한 식비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전반적인 시설 대보수비나 운영 인력에 대한 것들을 국방부에서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판단인 거고. 어찌 됐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중간에 타 부처의 반대라든지, 어찌 됐든 서로 간에 이익과 관련된 거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국방부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명확성을 좀 더 구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는 아닙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군인 출신이라서 다르시구먼.

이미 21대에, 이미 작년부터 검토가 돼서 지금까지 여러 번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법에 정식으로 넣는 건데 교육부하고도 합의를 했고 지방교육청하고도 이미 구체화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하면 부승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지정과 설립에 관련된 건 교육부·교육청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부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지정하고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심 가지고 조치해 놓겠습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학교와 신설 학교의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이 지원 근거하에 평준화 지역이나 비평준화 지역이나 공히 학교 설립에 대한 신청을 지자체 의지에 따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과정은 투명하고 아주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애초 근본적인 그런 어떤 평준화 지역은 되고 비평준화 지역만 한정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허영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방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춘천시장님도 이해했다고 하셨어요.

○허영 위원 그런데 저는 명확하게 그러한 대로 진행되면 반대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아니, 왜냐하면 정부 기준에 의해서 평준화 지역은 자율형 이걸 안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는 거지.

○허영 위원 그런데 굉장히 웃긴 게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평준화 지역도 그냥 전환을 해서 춘천고가 그렇게 전환이 돼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아니, 지금 이것 자율형 공립학교는 안 됩니다.

○허영 위원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이건 안 됩니다.

○허영 위원 그래서 춘천고가 그렇게 지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고 하는 교육부의 여러 가지 고등학교의 형식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문턱이 없는데 유독 이런 부분들에, 군인 자녀 지원을 위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립학교 부분……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아니,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허영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천고가 이미 지정을 받아 가지고 공립고등학교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언제 한 것을 얘기하세요?

○허영 위원 역으로 보면 화천에서도 기존 고등학교를 전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로 설립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모로 앞뒤, 전후의 관계를 봐서는 만약 그런 방침대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조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제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학교를 선택해야 될 문제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을 나눠서 설립 근거를 만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보건복지관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이 조건을 평준화, 비평준화라고 딱 무 자르듯이 기준을 삼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춘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비평준화 규정이 시조례랍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시조례로 춘천시의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게 시조례를 열어 놓으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시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고등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신청을 못 했다 그러는데요……

○허영 위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오해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해고, 교육부의 지침이 나와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위원님, 이것은 지금 학교별로……

○허영 위원 그것을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학교별로 신청을 하는 건데요.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라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방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위원님 만장일치제기 때문에, 그러면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는 허영 위원님은 반대하시니까 이것은……
○허영 위원 반대가 아니라 그런 조건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반대가 아니고요?
○허영 위원 예, 조건부 찬성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알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못 하시면 내일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동의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군인가족의 날은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조건을 다셨어, 동의를 안 하신다 그랬어요.
○허영 위원 예, 저는 국군의 날에 군인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그리고 군인가족의 날을 겸한 국군의 날 운영을 제안드린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소위 심사자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송옥주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통사항이 있어서 병합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심사경과는 생략하고요.
먼저 두 개정안의 공통사항은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격오지 근무하는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그 밖에 군무원 자녀에 대한 전·편입학 지원, 어린이집 설치 또 군무원 자녀에 대한 숙식 지원, 교육시설 지원 시 군무원 자녀 고려 등 기존 군인에 대한 지원 규정에 군무원 자녀에 대한 지원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1대에서 동일한 내용의 의원안이 저희 법률안소위에서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의원안은 격오지 근무하는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외에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비전투분야 군무원 정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이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군인이 아닌 군무원의 주거지원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동법에서 규정

하는 것이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방부는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관사·독신자숙소만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한편 기재부하고 문체부, 환경부는 기존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 재정 부담 및 타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개정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의 측면에서 주거지원, 군무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 교육지원에 신중한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하 조문대비표에는 조문별 검토의견, 부처의견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송옥주 의원님하고 김성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군무원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건데, 근본적으로 법률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부내용 구성들이 좀 복잡한데, 한 일곱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주거지원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 의견은, 군무원들이 지금 현재 한 4만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격오지에 근무하는 분류된 인원들이 지금 한 19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관사나 독립 간부숙소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주거보조비는 지금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관사 지원하고 아파트, 그걸 못하면 민간주택 하는 전세자금 대부 또 주택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 기본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걸 신설하는 것은 좀 신중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군무원들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이런 것들도 지역 어린이집들과의 문제 또 이런 것들과 했을 때는 어린이집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것이 결국 여러 가지 지자체라든지 상생에 있어서 또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검토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 하면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격오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합니까? 지금 4만여 명 중에서 1900여 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GOP 지하고…… 저희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입니다.

○임종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되어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군무원에서는 격오지 및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 두 군데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오지는 갑 지역은 비무장, 울릉도·독도·서해 5도가 되고요. 을 지역은 해발 800m 이상 고지대, 접적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2㎞ 이내, 그다음에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은 갑 지역을 제외한 도서지역, 그다음에 을 지역을 제외한 고지대, 그다음에 접적지역 제외한 접경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군무원들이 4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전방지역으로 배치되는 군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한테 지금 민원 들어오는 내용을 봐도 군 지역만 되더라도, 예를 들어 화천군이다, 거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군에서 관사라든가 어떤 독신자숙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집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군무원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 뭐 도저히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서 그만두고 나와서 다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서 이 격오지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성 있게 아마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법령으로 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쉽겠냐 하는 부분들이 들고요. 숙소지원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국방부 차원에서 정해 가지고 반드시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보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군무원들이 한 4만여 명이 되는데 군에서 숙소지원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이 한 6천여 명 되니까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있는 관사나 간부숙소 중에 공실이 생기거나 운용이 가능할 때는 지원하도록 저희가 주거 운용 훈령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군인처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 인원들에 대한 숙소들을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적인 면에서 지금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는 전향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이게 사실은 보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군인복지기존법 대상에 군무원이 해당됩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부승찬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1조에 보면 군인에 대한 복지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명확히.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군인……

○부승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무원인사법이나 이런 쪽의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이게 꼭 군인복지기본법에…… 입법취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병력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또 군무원의 역할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맞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 상황에서 군무원들 신분에서 보면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발전이 필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군무원인사법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완하는 게 낫지 굳이 군인기본복지법에 '할 수 있다'. 의무조항은, '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고, 이런 것은 과연 여기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우선적으로 그런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수립이 돼 있고 그 발전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그 종합발전계획의 법적 근거는 뭐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

○부승찬 위원 이것 답변하시겠……

○국방부차관 김선호 법적 근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게 종합발전계획을 만들었어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군무원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잖아요. 됩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재량껏 가능한 겁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하고의 관계성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무래도 이게 재정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결국은 복지다 보니까 재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러면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합발전계획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립이 됐는지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이 나왔으면 이게 군무원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법에다가 이 종합발전계획을 넣어서 군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아까 서두로 들어가서 군인복지기본법 입법취지는 동의하나 군인복지기본법에 넣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지난번, 먼저 21대도 이것과는 조금 다른 거지만 유사한 법이 통과가 돼서…… 그때 제가 법사위 법안소위원회 위원이었어요.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 가서 이제 안 됐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국방부가 지난번에도 찬성하지 않은 것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켰었는데, 문제는 전부 다 획일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전방지역, 생활이 열악한 지역, 이런 곳에 우선으로 지원하자 그러는데 핵심은 지금 법적 근거도 근거지만 국방부에 군무원이 근무할 수 없어요. 군무원 과가 없습니다.

차관님하고 뭘 해야 되냐면 국방부의 조직에 군인과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필요시 군무원도 근무할 수 있다' 해서 일단 과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선 군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1번이에요. 그걸 만들라고 아무리 해도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

파견 형태로 운용하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군무원정책과가 있고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게 과장인데 공무원들이고……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군무원 한 명을 파견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무원이 정식으로 근무해서 거기 과장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등이 가려운데 자기 손이 안 가면 남의 손으로 긁어야 되는데 엉뚱한 손으로 긁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격오지에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자꾸 미루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제가 봐도 문제가 없어요. 아파트에 거주하면 그 어린이집 보내면 돼, 군인아파트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일 퇴직을 많이 하는 군무원들이 누구냐 하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가 제일 먼저 퇴직을 해요. 퇴직하는 이유가 가서 살아 보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밥을 끓여 먹고 또 교통대책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해 줘야 될 게 독신자들이에요. 독신자 군무원들에 대한 지원이 1번이고,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 거고,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독신자도 아파트가, 주거지가 모자라는데 군무원까지 주자 그러니까 국방부는 반대할 수밖에. 제가 봐서는 이것을 도저히 여건이 안 되니까 계속 미룰 수 없는 거예요.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법을 축소해서라도, 안 되는 건 빼고라도 나머지는 넣어 줘야 되고……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이건.

21대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걸 해 주자고 해 가지고 법을 통과시켰거든. 그런데 핵심이 두 가지거든. 숙소, 숙소를 해 줘야 돼요. 가서 살 집이…… 전방 가 보세요. 어디 세를 얻어서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살 집이 없어. 서울에 있는, 독신자들 들어가 사는 그런 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마냥 반대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반대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여건 내에서 운용에 대한 그걸 좀 살려서 그런 영역에 있는 군무원들이 군 관사라든지 독신 숙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넓혀 나가는데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모든 군무원들을 다 해 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준비들을 저희들 해야만 됩니다. 추가적인 아파트도 확보해야 되고 관사도 확보해야 되고 독신 숙소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기재부하고 협조해 가면서도 나오는 것이 이것을 군무원을 해 주면 그러면 지금 타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전혀 지원 못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도 또 이제 해 달라,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격오지라고 하는 좀 특수한 지역에 한정되게 해서 적용을 해 나가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하여튼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 법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주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원 문제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중 검토하다 보면 전체 문항에서 제외할 건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

은 하고, 만약에 수정해서 간다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하여튼 이 법은 지금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지금 현재 이 원안으로서는 좀 제한이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자꾸 미온적으로 하니까 확보를 못 하지요.

결혼한 군무원들이 아파트 여유분이 있을 때 들어가서 살면 그 사람 자녀에 대해서는 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런데 지금 미혼자들이 뽑아 놓아도 자꾸 퇴직을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영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허영 위원 예. 저는 한기호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군인복지법상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군인복지법상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전체 모든 지원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들이 부담스러우면 격오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한정요건을 둬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타 의원께서 정부조직법상 공무원·군인 외에 군무원 규정을 둔 그러한 조직법 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신분상의 명확한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관 법문에 주거지원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정적으로 담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감사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합 조정하여 정리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5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요. 법안의 주요내용은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

여 주택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주택수당 지급액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군인 주거지원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군인복지기본법이 주택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아닌 군 관사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군인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급지 기준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연구분석 및 관계부처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군 관사가 아닌 주택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현재 건립된 군 숙소의 운용률 저하 및 이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역시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유용원 의원님의 개정안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지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의견 거기에 국방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률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재원 확보라든지 또 임차료 시세라는 것들은 매우 유동적이고 지역별로 워낙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급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려면 상당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하는 쪽으로 저희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차관님, 그게 아니고 여기 이 안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돈이 남는 걸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더 지원해 준다는 게 우선 핵심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주거지원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요청하는 것도 100% 다 수용을 못 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자금 지원 대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지원 예산금보다 신청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연간 얼마 지원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세자금지원 대출금은 금방 확인하겠습니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시설기획관입니다.

전세자금 이자지원은 저희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500억~600억 정도의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더 지원해 줄 여력은 없어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재원이 계속 고갈되고 또 이자율이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약 한 6000명~7000명 정도를 저희가 이자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모를 늘리는 부분에 대

해서는 조금 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유 위원님, 강력하게 좀 말씀하십시오.

○유용원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이나 국방부의 설명 그다음에 어려움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국방부에서 일단 관사를 지급하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수당을 많이 늘리면 이게 근본적으로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군 관사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군인과 그 가족들의 눈높이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런 점에서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국방부에서 입장을 낸 것은 미혼 간부는 35만 원, 기혼 간부는 7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거하고 중첩되는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택수당이 16만 원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유용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얼만큼 올리는 걸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현재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16만 원으로 동결돼 있고, 저희들이 최초 35만 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정부안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유용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35만 원, 70만 원도 이게 어느 천년에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국방부의 그러한 설명이 상당히 실망스럽다. 특히 군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16만 원 주택수당이 아시다시피 재작년에야 27년 만에 올라간 건데 민간시설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아파트의 23%, 오피스텔의 46% 수준인 걸로 국방부 자체 연구용역 결과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군간부 숙소 확보 문제는 정책적으로 간부 숙소, 관사, 아파트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이런 큰 틀 내에서의 해결이지 이것을 수당으로서 해결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그 영역에 있어서 개인적인 자기 돈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한테는 이것들이 참 요원하고 먼 얘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느낌이 그렇게 오시지는 않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당을 올려서 계속 확보를 해놨을 때는 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어떤 지적사항, 발의 취지 그것들을 공감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숙소의 공백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정책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기재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저희 기재부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서는, 군인 관사라든가 숙소 문제는 최우선 순위로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관사하고 간

부 숙소, 기본적인 큰 틀 내에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택수당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현재 유주택자라든가 개인 선택에 따라서 주택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까지 소재지 시세까지 고려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 재정이 감당하기 좀 힘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국방부에서 말씀하셨듯이 관사하고 숙소 확보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기혼자 중에서 입주하지 못한 인원이 몇 %나 돼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시설국장입니다.

저희 수당을 받고 있는 인원이 전체의 16%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16%?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국방부는 이건 어렵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수당보다는 다른 정책으로 근원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유용원 위원 참고로 제가 제안한 안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의견 하나 내고 싶은데……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수당을 받는 인원들이 관사나 어떤 주택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상황상 못 들어가는 인원에 대해서 수당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턱없이……

○국방부차관 김선호 자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주택수당을 받는 인원도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희망에 의해서 받는 사람도 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임종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관사라든가 그다음에 BOQ라든가 이런 시설들 자체를 충분히 만들어 주면 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여유 있는 자금들을, 지금 16만 원 주는 것을 반으로 줄인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수당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택 정책 자체를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마련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당받는 대상자가 줄어들게 될 거고 줄어들게 되면 더 많은 수당을 할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니까 유용원 위원님 말씀이 지금 이 법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법이 있다 하더라도 더 늘려 주지는 못하는 건데 뭘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데 이 수당이라는 것이 시세를 고려해서, 수당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그것은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불 안 할 수 있는 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당이 시세 차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면 그것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결정되면 저희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주택수당 현실화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16만 원에서 순차적으로 올리는 문제들이 해결이 못 돼서 아마 이것이 해결됐으면 유용원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시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주택수당을 좀 더 상향시켜 나가고 주택 확보 정책, 이 두 가지 트랙을 잘 유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유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유용원 위원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좀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제6항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심사 경과 생략하고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겁니다. 현행법 시행일인 2021년 10월 14일부터 2년 이내, 즉 2023년 10월 16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미 그 신청 기한은 도과됐습니다. 법 제정 당시 공로금 지급 목표였던 4542명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신청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 연장에 따른 행정소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도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기재부도 신청 기한 연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건입니다.

개정안은 공로자 및 유족으로 구성된 한국유격군총연합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단체에 대하여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유격군총연합회를 법인으로 하고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 단체에 대한 예우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점이 있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단체 설립의 근거는 별도 법률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 의견이고 국방부는 비정규군 공로자의 희생과 헌신을 실질적

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별도의 단체 설립 관련 법률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국가보훈부가 아닌 부처에서—예컨대 통일부처럼—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급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에 동의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도 현재 연간 운영비가 한 6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예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단 보훈부에서 제기했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의해서 이것들이 처리가 되는 것과 관계됐을 때 국방부가 별도로 이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을 추진했을 때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법안을 마련해서 가는 것도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다른 분이 질의하실 게 없을 겁니다. 제가 6개월로 했는데 국방부가 판단해 보니까 1년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1년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별도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단 지원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별도 법을 추가 발의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허영 위원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운영비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보훈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법인단체 만들고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허영 위원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으로 남기고 연장 건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원안이 아니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비정규군 이분들이 다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훈장도 다 못 찾아 드리고 신고하라고 그러는데 신고도 안 되고 해서 연합회 단체를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까지 봉사로 하시던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원이라도 1명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달라, 줘야지만 나머지 분들을 찾아 드릴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되는 건데 국방부에서 지원하기가 곤란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법을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제7항 구자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은 인정됐다고 봤고요. 다만 제정안의 주된 내용인 생활지원금·의료·교육비·취업·심리상담 지원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의 경우에는 기존 제도 활용 가능성,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법의 제정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으로 국방부는 생존장병 중 현역, 전역자, 사망자의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국가보훈부는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및 기존 법과 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49페이지의 제21대 국회에서의 천안함 관련 특별법안 심사 경과를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한기호 의원님, 장제원 의원님, 신원식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 법안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법안소위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국가보훈부의 신중 검토 의견 등으로 가결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돼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내신 것에 저희가 동의하고 그러나 일부 국방부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된 피해 대상자가 104명입니다. 이 중에서 현역병이 22명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인원이 28명, 등록되지 못하신 분이 여덟 분이 계시고 사망자 유족분이 마흔여섯 분이 계신 겁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 사망자로 인해서 사망 유족과 관련된 분들은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관련된 지원들, 즉 생활지원금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시지 못한 여덟 분에 대한 지원 문제가 같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부가 얘기했던 유공자와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보훈부가 제기했고 저희 국방부도 생활지원금 지급하는 문제, 교육비 지원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에 이것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규정도 다른 법규하고 했을 때…… 처벌 예외 조항을 두는 이런 쪽으로 같이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법도 발의하고 심사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생활지원금·교육비 2개를 빼고 여덟 분에 대해서 의료하고 취업과 심리상담 지원 이것만 살려서 법을 만들면 안 돼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사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기존 법규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번에 만약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 부분만 살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덟 분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준다 그것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교육비도 지원한다는 게 안 맞고. 그래서 의료와 취업 및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 두 가지 넣어 주는 것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신원식 의원, 장제원 의원, 저, 이렇게 냈다가 통과가 안 됐지만 심의는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보훈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 보훈부 누가 오셨어요, 오늘은 오셨을 것 같은데? 안 오셨어요? 결정적일 때 안 오시네.

이것 하면 국방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훈부가 해야 되거든. 보훈부 이의 없지요, 이것 2개만 한다고 그러면? 다 빼고 의료와 취업 및 심리상담 지원 이렇게만.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보건복지관이 보훈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명 중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 지원이나 심리상담은 지금도 국가유공자지원법이나 제대군인지원법에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넣으시면 보훈부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어느 것 빼고 어느 것 넣고 분명하게……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말씀하신 대로 의료 지원 넣고 심리상담 넣고 취업 지원 넣고 그 세 가지는 기존 법률에서도 가능하고 별도의 재정 소요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보훈부에서도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자꾸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법이 되는데 이것을 넣어서 통과시키면 일단 종식시키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완전히 수정해 가지고 이것만 살려 가지고 이번에 법을 갑시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방금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부분만 살리는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도 가면 법사위 가서 막혀 버려요. 그래서 아예 법사위에서 통과될 범위를 해서 보내면 통과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허영 위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가 아니라 수정한 부분……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수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및 제9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입니다.

성일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계하여 심사하는 이유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한 수업연한, 교장 등의 임명, 학비 등의 상환 등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복무와 의무복무기간 15년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장기복무 의무장교 양성을 위한 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6년간의 수업연한을 거쳐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민간 의과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의학 교육이 가능한 사관학교를 이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 신축 뿐 아니라 선발인원 협의, 입학전형 마련, 의학과정 외 군사학 과정의 교육범위·방법, 의무복무기간의 적절성 및 미이행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학교 운영 형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검토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황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8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상정 후 소위에서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 측도 의무사관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 및 의무사관생도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가 선행된 후에 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 제시한 것에 국방부도 동의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 제정안에 보면 부칙에 공포하고 1년 뒤에 이것을 시행하도록 법률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학생 선발, 학교시설 준비, 제반 모든 것들을 갖추는 데 1년 안에 이것을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법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차관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의무사관을 양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국립의료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런데 왜 그때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말았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기존에 의과생들을 양성하는 여러 가지 학교 교육, 그다음에 인턴·레지던트 과정에서의 방법, 절차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화된, 차별화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기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하는 그런 외부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군 장교를 위탁교육을 시키잖아요, 의학대학원에?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연간 평균 몇 명씩 들어갑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1년에 한 12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학년으로 하면 한 40~50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런데 작년도에 의무복무가 끝난 사람 중에 장기복무를 하려고 남은 사람이 몇 명 남았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장기 전환한 인원은 없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한 명도 안 남았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니까 군의관이 장기 한다는 게 지금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75쪽에 보면 민간의대 위탁교육한 인원이 의무복무를 9년을 하고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41세, 여기는 44세예요. 3년을 더 써먹겠다고 우리가 의무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지. 이것은 그렇게 가치가 높다고 생각 안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의무사관학교를 만들었을 때 정말 지원을 하겠느냐, 이걸 하겠다고 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지금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했던 것 중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것 하려고 하다 못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장교 확보하려고 사관학교에서 양성한다고 하다가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지요, 법은 있지만?

○국방부차관 김선호 기술대학은 진행을 했고, 그것이 중간에 좀 단절이 됐고 다시 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지.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지금 이 법안에 보면 15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의무복무 마친 다음에 장기를 안 하고 떠나갈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현재 의무복무가 15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아마 본인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실태를 보면 아마 의무복무를 마친 다음에 소위 계속 근무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관련 관심이 있어서 성 위원장님 발의하신 법안을 좀 보완해서 법안을 발의할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종의 의사 2종 면허 같은 것을 신설하고 의무복무기간 동안 군에서만 면허가 유효하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위원님이 주

신 의견 저희들이 받아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지금 군의관들이 왜 군에서 장기를 안 하고 떠납니까? 이유가 뭐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밖의 의사들의 생활과 군의관의 생활이 여러 가지 질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제가 19대 때 수도병원에 가서 의사들하고 군의관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수도병원에만 계속 근무하라 그러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의관들 자기들 사는 군인 아파트가 밖의 자기 친구하고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사는 아파트는 40평짜리 이런 데 사는데 자기 집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관 아파트를 좀 잘 지어 달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 당시에.

그다음에 지금 수도병원장은 민간인이 하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예비역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하여튼 민간인이지요.

그다음에 대전병원장도 민간인이 하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지금 병원장 중에 민간인이 하는 병원장이 몇 명이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2명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보건복지관입니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2개 병원장 외에는 다 현역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도 병원장들이……

수도병원이 대령이었었나요, 준장이었었나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수도병원은 준장이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 준장 자리가 하나 없어진 거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다음에 대전병원은 대령 자리가 하나 없어지고.

군의관들도 군인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진급에 대한, 명예에 대한 것이 있다고요. 그걸 위에를 자꾸 없애 버리고 군의관들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게 이율배반적이다 이거지. 이율배반적이에요. 수도병원장을 다시 준장 자리로 환원시켜 보세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자꾸 고위직에 있는 걸 전부 민간인으로 바꾸는 거야, 현역 자리를. 그러고서는 장기 안 한다고 자꾸 얘기한다니까.

지금 책임운영기관이 총 몇 개 기관입니까, 국방부가 지금 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이?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보급창, 정비창 이런 데…… 그렇지 않아요? 아시는 분 있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27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거기도 전부 다 현역 군인이 있던 자리를 다 민간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군대 생활을 하겠어요?

부승찬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부승찬 위원 저는 다른 의도로 전역을 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국가가 지출하는 비용은 비슷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위직 공무원이나 현역 대령이나 준장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돈이 더 절약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군인들을 점점 어려운 환경 속에 모느냐 이거지.

이 의무사관학교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한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연구용역 중이기도 하고 또 여타 의원님들께서 관련 법들을 준비 중에 있거나 또 발의를 했는데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않은 법안도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여러 의료대란 속에서 이런 지역의사제, 공공의사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등등 해서, 그때에 맞춰서 종합적인 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 및 군인사법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다시 논의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및 9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페이지 94쪽이 되겠습니다.

강대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징집되어 참전한 자를 소년소녀병으로 정의하고 그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참전함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 및 교육기회 상실로 인하여 제대 후에도 사회 적응과 자립 기반 마련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 소년소녀병이 겪었던 피해를 고려할 때 소년소녀병에 대한 국가의 보훈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법률안 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나 조문별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6·25 참전자인 소년소녀병에게 참전명예수당 등의 보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참전자별 개별 보상이 촉발되어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제정안 논의 연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 법안은 동일한 법안이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저희 국방위에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수정의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나 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제20대 및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저희 국방위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개별 입법보다는 전체적인 국가보훈체계 법 속에서 논의 필요성 등의 사유 또 기 보

훈혜택 수혜, 타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상이 계급에 기반하여 특별한 희생과 공헌도에 따라 보상하는 현 보상체계와의 미부합 등의 사유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이하 조문대비표에서는 소년소녀병의 정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보상금의 범위, 소송 제기 요건 등 주요 항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국방부에서는 조문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상자에서는 '징집'으로 명기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자원 입대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징집 또는 지원이 포함되고,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서 된 거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이라는 용어보다는 '위로금'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기했고, 전체적인 소년소녀병들은 입대를 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군번을 부여받고 정규군으로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중 징집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삭제하면서 수정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제가 18대부터 21대까지 계속 상정돼 가지고 폐기되는 과정에 항상 봐 왔던 사람인데, 정부 측에서 핵심은 간단히 얘기해서 연령이 18세 미만인 사람이 군에 와서 복무한 것은 위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타당하냐 하는 게 국방부나 보훈부의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금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그러면 솔직히 당신들 내심은 뭐냐 하고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명예고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6·25 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물론 참전용사로 수당을 받고 있으니까 위령비도 세워 주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다른 데도 동의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체가 보상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도 19대 때 올렸지요. 올렸는데 법사위에서 결국은 안 되고 그 이후에는 국방위원회에서도 아예 통과가 안 됐는데. 이건 법 내용을 완전히 바꿔야지 돼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선 기재부가 찬성하지 않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찬성 안 하잖아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냥은 안 돼요. 지금 강대식 의원님께서 저한테 꼭 이거는 이번에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법을 만들어야 돼요.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몇 가지 좀 정부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6·25 참전 관련 법에 의해서 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상 사례는 어떤 게, 몇 명 규모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보훈부 주관으로 있고 6·25 참전 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월남전 참전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등록된 65세 이상이고 월 42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6·25 참전, 월남 참전 대상자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금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소년소녀인 상태에서 지원에 의한 것이건 징집에 의한 것이건 참전해서 그 관련 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법률은 필요치 않은 거 아닌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이 인원은 이제 거기 대상에 안 돼……

○허영 위원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지금 저희가……

○허영 위원 그런데 이미 그 보상이 이루어진 대상은 또 어떤 대상자입니까? 제가 여기 보면, 정부 의견 측 기획재정부 의견에 의하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참전자인 소년소녀병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보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참전자별 개별 보상법이 촉발되어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년소녀병에게, 저는 딱 보니까, 거의 한 3만 명에 육박한 이 대상자는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대상자하고 전혀 다른 대상자 얘기입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허영 위원 기재부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런 입장을 내신 거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동일한 인원인데 추가적으로 보상금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별도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보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달라……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예, 참전명예수당 42만 원 말고 더 달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반대했듯이 타 유사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걸 감안했을 때 또 다른 분야에서 이러한 막대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기념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해 줘요, 기념사업? 이 사람들 보상을 추가해 달라는 게 아니고 기념사업을 하겠다, 동의하느냐고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현재로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해 준다 그래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는 항상 예산 심의 과

정에서 같이 검토해 볼 수……

○임종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차피 참전수당은 지금 같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신분 자체가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위헌적 요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8세 이하이면서 자원을 했든 징집을 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재원의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들을 위로금의 형태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기념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은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소년소녀 단체들이.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는 게 어떻냐 생각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이분들도 이제 다 돌아가시고 많이 안 남으셨어요. 생존자가 이제 2786명인데, 이분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다부동 지역의 낙동강 방어선에 제일 많이 투입되신 분들이라서 여기에 어느 기념사업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 주면 국가가 잘못하는 거지요. 위로금을 추가로 안 드리는 건 기재부나 정부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기념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그래서 기재부한테 제가 찬성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대해서는.

○허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이 2개였는데 하나밖에 못 해 가지고 마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예.

○허영 위원 그리고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데, ‘배상 또는 보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시가 있는데 2015년 헌법재판소의 이 판시 이후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허영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판시에 따라서 기존 법률에 의해서 배·보상을 해 왔으면 이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계속해서 정부가 무시해 왔으면 이 법의 필요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

밑에 실무자들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이후에 소년소녀병에 관련해서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추모 선양사업은 아직까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이 판시 이전에도 소년소녀병에게 보상은 계속해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었던 것이지요, 그 이전에도?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참전명예수당 42만 원 지급되어……

○허영 위원 참전명예수당은 그렇게 해서 지급되어 왔는데 5명이 다시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추가적인 배부 사항이 또 필요하다라고 판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조치가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기호 위원님을 비

롯해서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기타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제시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보상할 수 있는 기타의 지원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필요로 하면 이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명확하게 그런 의지가 정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법은 여기서 논의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를 해 줘야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기념사업이나 기타 지원할 수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국방부가 지금 현재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좀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 이후에 조치된 것들 그 내용 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를 하고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 110쪽에 보면 '보상금 지급' 해 가지고 '본인 및 유족 합계 788.9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2025년 157.78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25, 26, 27, 28, 29 계속해서 똑같은 액수가 편성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금 현재 42만 원 주는 데다가 얼마를 얹어서 드리는 건지, 숫자가 계속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돌아가시면 그다음에 안 드리잖아요. 이건 잘못 추계를 낸 것 같은데…… 참전하신 분들에게 얼마 액수를 정해 놓고 일시금으로 드리는 거지 매달 더 드리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가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강대식 의원님한테 국방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법을 만들어서 드려 가지고 통과를 시킵시다. 그래서 저는 번듯하게 위령비라도 만들어 드리고 하면 그만큼 위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게 판단해서 강대식 의원님하고 문의해서 다시 수정된 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법률안을 만들어서 강대식 의원님한테 드려서 다시 법을 발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방안전기본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위원님들 소위 심사자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2권 2페이지, 의사일정 제11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안전기본법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1조에서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안 제3조

에서 국방부 및 국방부 예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4조에서 국가의 안전 정책 계획수립 및 집행 등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 안전관리 총괄 정책심의기구인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임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른 안전관리담당관의 지정 또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5년 주기의 국방안전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매년 이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요. 안 제28조에서 안전사고 보고 절차의 정립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국방 안전의 날 시행을 포함한 안전문화 증진 및 대외협력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3페이지 중단에 있습니다.

현재 국방인력 및 국방자산과 관련된 안전 분야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부대훈령 제4편 사고예방 그리고 2020년 12월 30일에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을 근거로 하여 안전사고, 군기사고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방 안전 훈령은 그동안 국방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26개 행정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던 국방부 훈령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 안전 훈령의 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국방 분야에서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적지 않은 인명 손실 등이 발생하였는바 제정안은 현재의 국방 안전 훈령을 법률로 상향하기 위해 국방안전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방 분야의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국방 인력의 안전을 군 내부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한다는 점, 이로 인해 국방 인력들이 긍지를 가지고 국방 업무에 전념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 제정안과 같이 국방 안전 훈령의 규정 사항들을 제정법률인 국방안전기본법으로 상향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방안하고 현행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그리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등 관계 입법례를 참고해서 군인 복지 관련 사항을 규정한 군인복지기본법에 관련 안전 규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있는바 입법 형식에 대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조문별 세부검토사항은 해당 조문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정부의견으로 국방부는 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조문별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사자료에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16쪽을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의견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동 법안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정법상 주요 안전조치인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조치, 안전교육 등의 의무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규정돼 있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제정안이 모두 적용되는 대상의 경우 중복 적용으로 인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부처 협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 그리고 제정안의 조문 체계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9페이지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주요 논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체적으로 국방 안전에 관련된 그것을 규정하는 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국방 안전 훈령에 반영돼 있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 법률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령은 대단히 상세하게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술이 돼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법률안으로 오다 보니까 이것이 좀 제한이 있어서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조 문항에 있어서 수정 내용들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수정된다면 법률 반영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이게 지난번에 안규백 의원하고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거기에 부대 훈령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국방 안전 훈령을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된 건데, 그러면 이것을 만들려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도 바꿔야 돼요. 거기다가 이런 훈령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도 바꿔야 돼요, 모법을, 이걸 법으로 바꾸면.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해서 이 훈령을 만들었는데 이 훈령을 법으로 올리니까 이 모법을 또 바꿔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언급하지 않은 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것 개정안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개정해야 돼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검토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두 번째는 훈령으로 할 것이냐 법률로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훈령으로 해서 사고가 더 나고 법령으로 하면 사고가 덜 나나요? 그것은 그걸 잣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임종득 위원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국방 안전 훈령에 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모습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됐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게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귀속되는 것들은 훈령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이게 법으로 되고 나면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해질 것이고 행정 소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훈령들이 또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기존에 있던 모법하고 관계 상충 때문에 개정 소요가 또 나올 것이고, 이런 많은 소요를 가지면서 얻게 되는 궁극적인 이익이

뭐냐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면이 좋아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차관님이 아셔야 될 게 경찰하고 소방공무원은 이 업무가 국민들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업무예요. 그래서 법률로 규정해야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령으로 안 됩니다. 국민들한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국방 안전에 관련된 것은 군인만 해당돼요. 그래서 이것은 훈령으로 해도 그 범위가 100% 다 포함되거든.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는 건데 경찰하고 소방공무원하고 군인하고 같이 칠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은 전부 다 민간인을 상대하는 거고 이건 군인들한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범주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걸 훈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김병주 위원님한테 국방부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제가 봐서 득실에 대해서 훈령을 법령으로 바꿨을 때 득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득이 확실히 있다 그러면 바꿔야지.

○국방부차관 김선호 만약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김병주 의원님실하고 소통을 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또 행안부에서 약간 의견을 제시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되니까 좀……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이렇게 합시다. 제가 김병주 의원님의 안을 여기서 가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보류해서 다음에 김병주 소위원장이 직접 할 때 상정해서 그때 심의하도록 이렇게 해요.

제가 여기서 결정을 하면, 그러면 김병주 위원장님께서 내가 위원장 안 할 때 한기호 위원님께서 부결시켰다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나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허영 위원 근거를 넣기 위해서 의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소위 위원장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 법안 자체적으로 봐서는 여하튼 그게 국방 영역이건 어떤 영역이건 이 안전 분야는 아마 이 시대의 최대 화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안에 훈령을 두게끔 만들어서 국방부 훈령이 자세하고 법안에 준하는 그런 훈령처럼 잘 체계화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나 국방의 인력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인들도 국민들의 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국방 안전에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해서 안전기본법하에 군 관련된 모든 법률이 체계적으로 통일되고, 그게 법 개정 절차는 좀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안전기본법하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가 군 관련된 모든 법안의 기초가 되고 또 관련된 체계의 통일성들을 갖춰 나가는 것은 군 법체계의 선진화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논의를 세부적으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심사 대상으로 남겨 놓고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이 법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김병주 위원장이 소위원장 할 때 그때 심의를 하도록 하고……

○유용원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질문?

○유용원 위원 질문 하나만……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예,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안전 훈령 제정된 다음에 군내 안전 관련 사건 사고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전에 비해서?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사건 사고 현황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훈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안전 사고 말씀하신 것은 안전 훈령이 생긴 이후에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그 전후 비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 전에는 아예 통계가 없어요?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훈 그 전에는 안전 사고와 군기 사고를 나누지 않고 그냥 사고로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 훈령에 따라서 안전 사고는 몇 건, 군기 사고 몇 건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군인복무기본법에 의해서 이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분이 되는데 과거 건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제11항은, 국방안전기본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이 부분도 심사자료 3권째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동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말로 폐기되어 있는데요, 저희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었으나 소위 안건으로 심사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발의되어 회부되었는데요, 바로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크게 네 가지 쟁점입니다. 그 네 가지 쟁점에 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 다 일단 놔두고요 고려사항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지자체장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의 목적보다 관계 지자체의 군 공항 유치 실익 여부가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시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 표명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이전후보지 선정 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동의 의견 등 사전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되는 내용으로 안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면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종전부지 및 이전후보지 지자체장과 합의에 의한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돼서는

종전부지 지자체장 및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군 공항 이전부지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여 동등한 지위에서 의견 개진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이 합의로 이루어지도록 할 경우 이전사업 자체가 관계 지자체의 지원계획에 대한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사업 지연, 사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의견으로는 국방부 및 수원시, 광주시, 전라남도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의사에 달리게 되는 문제 및 현재의 절차에서도 지자체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화성시는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 주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 내용의 본질은 지금 현재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다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절차에 돼 있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 이 협의가 동의 또는 합의라는 구속력이 있는 절차로 다 이제 바꿔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아마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 절차가 매우 어렵게 될 수 있고 특정 지자체장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정당한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의 의사 결정이 반영되지 못하고 사업이 또 보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전 의장을 하셨던 김진표 의장님은 수원 군 비행장을 이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화성의 송옥주 의원님은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두 분이 다 국방위원회에 계시면서 아주 첨예하게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냐 합의냐 동의냐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협의냐 합의냐 동의냐.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동의입니다. 동의를 집어넣으면 못 가는 겁니다. 내가 '동의 안 해' 그러면 끝나 버려요. 그런데 합의는 그래도 조금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협의 조금 더 여지가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동의, 합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수원 비행장하고 광주 비행장하고 두 개가 문제가 되는데 두 개 비행장 지역에 받아야 될 곳에서는 동의로 해 달라 이게 핵심이고 보내야 될 곳에서는 그것 없이 협의로 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부승찬 위원님이 공군 출신이시니까 부승찬 위원님은 꼭 한 말씀 하셔야 되겠네요.

○부승찬 위원 이게 공군 출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정부 정책 결정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에 있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다, 그냥 개념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어서,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송옥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은 수원시의 숙원사업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 분야가 상당히 점점 더 입지를 잃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 동의라는 개념을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성공적인 사례는 대구의 K2 비행장입니다. K2 비행장에 대한 법안도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했는데 당시에 그 법은 법을 만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법이에요. 만들어서 대구시장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도지사가 또 검토를 하고 양쪽에서 세미나를 수차례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양쪽에서 동의하는 법안으로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러면 경기도에서 수원이나 화성, 광주 그리고 광주 옆에 다른 어떤 기타 지역에서 이것을 함께 법을 검토해야지 한쪽에서만 법을 내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게 항상 그래서 문제가 돼요. 지금 김진표 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 김진표 의장님이 계시면 법 또 냈을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는 거지.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법이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그냥은 도저히 못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 계속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제13항 정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네 가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경찰의 수사직무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 이첩과정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민간으로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여 민간이관 범죄에 대해 군사경찰의 이첩의무를 명확히하고 해당 범죄의 수사가 재판권이 소재한 적절한 소관기관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2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 필요성 및 법조문의 경제성 측면을 함께, 이미 규정돼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사는 내사, 수사의 개시, 수사의 진행, 수사의 종료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법원법에서 한 절, 예컨대 제228조～제288조를 할당해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의 여러 가지 내용 중 민간이관범죄 이첩 부분만을 특별히 강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부대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입니다.

이의제기권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개정안의 이의제기권은 모든 직무에 대해 군사경찰의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있어 부대장의 지휘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군사법원법의 이의제기권은 군검찰사무, 예컨대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한정되어 군사경찰의 다양한 직무범위와는 상당히 다른 점 그리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시 공정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는 범위는 수사에 한정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제기권의 보장 범위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국방부장관 등의 지휘·감독권 내용 신설 및 서면에 의한 지휘·감독의 원칙 명시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측면은 위에 확인하시고요.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군사법원법에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직속 하급자 및 소속 기관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검찰사무와 군사경찰의 직무범위는 상당히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권이 제한된다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명령하달체계가 필요한 군 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의 지휘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서면에 의한 지휘·감독은 구체적인 사건에 해당되면 군사범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군사경찰의 모든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휘·감독의 신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나타나므로 특별히 합리성이나 책임성이 요구되는 직무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경찰의 범죄수사 등에 대한 독립성 보장 명시 관련된 조항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수사직무 수행 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격상시키면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도 독립성 보장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군사경찰의 공정한 수사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독립성을 법률에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4항까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군사경찰 부대장의 지휘자·감독자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개정안과 같이 동일 조에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함께 규정하게 되면 지휘감독권과 독립성 상호 간 적용 범위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정부 의견을 보면 국방부는 개정안의 내용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

므로 군사경찰 직무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기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관련하여서도 전체적으로 신중한 접근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체적으로 정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법은 군사경찰 직무법에 관련된 것인데 군사경찰 직무법의 목적은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군사경찰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것들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과 관련된, 경찰청에서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직무에 관련돼 있는 직무법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서 넣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체계상의 어떤 정합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저희 법무실 의견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네 가지 정도인데 범죄이첩 과정을 명시하는 것은 이미 군사법원법에 있기 때문에 이 직무법에 이것을 다시 넣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고.

지금 이것이 군사경찰의 일반 직무에 관련된 것을 포괄적으로 한 법에 수사와 관련된 것을 플러스하다 보니까 두 번째에 있는 부대장의 지휘·감독권을 할 때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수사에 관련된 것 외에도, 군사경찰의 일반적 직무에 관련된 것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 범위를 다 함의하게 돼 버립니다. 그랬을 때의 문제점.

세 번째 나왔을 때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같은 개념으로 포함이 돼 있고, 마지막에 군사경찰의 독립성 보장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면 군사법원법에 군검사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군사법원법에서의 군검사 또 저희의 어떤 검찰청법 관련해서도 보면 이런 수사하는 직위에 대한 어떤 독립성을 보장한다라는 문구가 별도로 그 관련 법규에 명기돼 있는 것은 없고 다른 어떤 구속하고자 하는, 지위하고자 하는 제대를 명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장한다라는 말을 이 직무법에 별도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호 의원님이 저것 때문에 만든 것 아니야, 채 상병 사건 때문에, 결국은?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게 핵심인데 여기에 채 상병 사건은 민간이첩 사항이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일반 수사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게 핵심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있는 법으로 해서도 일단 보장이 다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십시오.

○허영 위원 이 법은 채 상병 사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상에 있어서의 한계 또 명

령체계에 있어서의 혼선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개정안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채 상병 사건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인지는 조금 더 확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지난 2021년 성범죄, 군인 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관을 했지요, 법원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는 수직적 상하관계 속에서 나타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특성상 그 법이 개정된 이유는 군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법이 이첩에 대한 근거가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 여러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 중에서 아직까지 진상 규명과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21년째 냉동실에 군 시신을 장기 안치하는 그런 사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장기 안치 시신 아홉 구가 최장 기간 21년 7개월째 지금 안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가족도 지금 아직까지도 인수를 거부하면서 사망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밖에도 짧게는 6개월, 3년에 이르기까지 7구의 시신이 장기 안치 중이거든요, 부모들이 자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군 스스로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민간으로 이첩을 하든지……

그런데 그런 장기 안치 과정 속에서 상명하복의 관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군 수사경찰의 복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나 그다음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신 장기 안치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봐서라도 이 법은 지금 정부가 이의 제기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더라도 반드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수사단에 대한 독립 보장 원칙과 이의 제기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상관이 구두 지시로 마음대로 수사에 대해서 보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명확하기 때문에 초기에 정보 보고하에 있어서 상관이 명확하게 문서에 의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여하튼 상관의 명령이 하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군 사법 정의의 실현과 여하튼 피해자 인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상은 민간에서 이루어진 모든 법안이 수사의 독립성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당연히 보장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이라고 하는 특성상 현재에 맞춰서 독립성과 이것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꼭 개정돼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사실은 이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에 제가 국방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애초 안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였습니다. 폐지였는데 국방부에서 상당히 나름 노력들을 했고 거기서 3개의 범죄 사건에 한해서만 범죄혐의가 인지된 즉시

민간으로 이첩한다고 해서 일정 부분 조율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원래 만들어질 때 취지는 뭐냐면 지휘관의 지휘권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구조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지휘관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라는 걸로 법의 원래 개정 취지를 이해 못 하시는…… 여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는 이 3개의 사건 그러니까 성범죄 관련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입대 전 범죄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군 내 사망 사건 중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제조건만, 이게 모든 법에, 군사경찰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재판권 자체가 민간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한정한다면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채 해병 사건 관련돼서 논쟁이 되는 것도 수사 지휘·감독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원인데 이종섭 당시 장관도 민관군 합동위원회 그 현장에 없었어요, 저는 있었지만. 현장에 없다 보니까 장관인데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서 당연히 내가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3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박탈한 거예요,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건데 그것을 마치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으면 왜 민간 사법기관으로 넘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논쟁을 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하고 수차례 만남을 갖고 이러면서 그리고 합동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뛰쳐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간 사법기관이 결정할 수 있게끔 터치하지 마라 이게 원래 법 개정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쪽 위원회하고 국방부가 타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방부장관, 각 군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민간 사법기관으로 뭐 하러 보내요? 그런 취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법도 수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취지를 살려서 보완을 하면 되지 않나 저의 의견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건 아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 발의된 군사경찰직무법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수사 범죄 우려하시는 그 영역 외에 군사경찰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질서 유지하고 경호 이런 모든 영역도 다 이것에 이의 제기, 지휘감독권,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넣어서 이것을 규정하는 법률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법체계에서의 정형성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른 법체계에서 거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승찬 위원 차관님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의 개정 취지는 그렇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의원하고 좀 논의를 해서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부승찬 위원이 얘기를 하신 것은 그러니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이첩 과정을 명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것에

한해서 일괄된 지휘·감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독립성을 규정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데 법률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 것은 범죄 이첩 과정으로서 한 개 조항에만 그것이 있고 나머지는 다 모든 것을 함의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안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법무관리관님!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법무관리관 홍창식입니다.

허영 위원님이나 부승찬 위원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자체가 사실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 아니라 국방위 소관 법률입니다. 군사경찰의 행정 작용하는 법률인데 그 전체에 대해서 나오는 법률에 대해서 그중에 수사에 관해서만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에 관한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은 군사법원법에 반영해서 나아갈, 체계상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군사법경찰관은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방첩사령부에 있는 군사법경찰관들도 역시 수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독립성이라든지 보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이건 좀 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시간 반이 지났는데 생리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해야 되니까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의사일정 제7항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법이라서 축조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에 대해 국회법 57조제8항에 따른 축조심사를 하고 다음 안건 하겠습니다.

소위자료 1권 51페이지입니다.

1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지난번에 생활지원금, 교육비 이 사항은 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통째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1조에서 7조까지 한번 봐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6조의 생활지원금 조가 빠집니다. 다른 건 이제 같습니다, 7조까지는.

정부 측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별 문제없으세요?

다음 8조부터 13조까지인데 8조……

○허영 위원 7조 의료지원은 들어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빼는 거고.
8조의 심리상담 지원……
○임종득 위원 7조는 들어가지 않아요?
○허영 위원 의료지원은 들어가는 걸로……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생활지원금 빼고, 의료지원금은 넣고.
그다음 8조의 심리상담 넣고, 9조 교육비 빼고, 10조 취업지원 빼고……
○임종득 위원 취업 들어갑니다. 취업 들어가야 돼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취업지원 들어갑니다.
○허영 위원 취업 지원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취업은 들어가고, 11조 주택 우선 공급은 빼고, 12조 살리고, 13조 빼고……
○허영 위원 12조는 제외.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12조, 차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12조는 제외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별도로 재단이 출연돼 있어서 여기에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의견을……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12조도 빼자?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빼고.
위원님들 이 뺀 거, 넣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3조 빼고…… 벌칙은 안 넣어도 돼, 벌칙도 빼고. 이걸 가지고 더 시비를 걸고 이걸 가지고 한다면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기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다음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4항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아까 군인 자녀들의 공립형 자율학교 설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교육부 입장을 확인을 해 보니 교육부는 명확하게 평준화·비평준화 구분에 대한 자체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제기한 평준화 지역 그거에 대한 구분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 측의 명확한 설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간단한 게 신청을 아직 안 받았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지금도 신청 중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받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면 춘천도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허영 위원 정부 측의 그러한 평준화·비평준화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서 정부 측 입장을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정리된 거지요? 그러니까 춘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그걸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교육부 쪽에는 충분히 그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교육부의 의견은 괜찮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교육부의 입장은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자체가 이걸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의사가 있으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다.

○허영 위원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 법안 통과된 이후에 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지역적 차별을 두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있어서 정부 측의 입장이 그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리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제14항 소위 심사자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 등에게 전투장비 및 탄약 등의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헌법 제60조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거나 국군을 해외에 파견한 국가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 등에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 시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제적인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분쟁발생국 여부 및 대여 또는 양도될 군수품에 대해 정부 및 국회가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이중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재량이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고 외국 정부에 대한 대여·양도 지연으로 외국 정부의 관련 지원 및 국제·외교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대통령은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하여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미국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 의회는 행정부가 채택하여 시행하려는 무기 지원 기준을 검토하는 식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한정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군수품 대여·양도에 관련돼서 그 권한을 국방관서하고 각 군에 부여하게 된 입법취지를 보면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고 이 대여·양도는 국방·외교 협력이라든지 방산 수출 이런 것에서 국익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애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배경을 저희가 추정해 보면 아마 전쟁이나 내전이 있는 지역에서 우리 군수품이 양도나 대여가 돼서 혹시 거기 전쟁에서 민간인 살상이나 이런 것들에 활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무기거래조약이라는 것에 가입돼 있는 국가로서 그러한 제반적인 것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군수품이 대여되거나 양도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전에 다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국회로 해 놓으면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허영 위원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 형태로 사실상 동의권을 행사하고 있고 대부분, 그러한 선진국의 사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쪽에 대만을 위시로 한 양안의 여러 가지의 군사분쟁 위기가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분쟁 위험지역에 대한 것들이 우리 국제관계 속에서 날로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만약에 정부가 어떤 그런 특정한 정치적 목적하에 의해서 국회 동의 없이 무기를 양도·양수하거나 또 수출하거나 할 경우에 있어서 심각한 국민적 위협과 그다음에 국가 간 분쟁으로 외화(外化)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나 국회의 동의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법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방부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일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상은 국회의 여러 가지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전쟁 위험과 국민들의 생명과 또 국가의 영토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군수품의 양도·양수와 수출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민감한, 거의 조약에 준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허영 위원님께서 수출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영향 이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낳는가 하면 군수품의 대여·양도와 관련돼서 국회 동의를 얻는다, 국회가 그것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주로 방산 관련된 일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아는데

하루에도 수십 건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을 국회에서 다 감독하면서 동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면 이것 하나도 통과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방산 수출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

대여하는 문제, 양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방산 수출과도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군 차원에서 어떤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후된 배나 선박이라든가 전투함들을 양도하고 대여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국회에서 다 관여하고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취지는 좋더라도 시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국회 동의 없이 뭐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들도 있었지만 지금 정부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이 이성적인 부분에서 타당하게 그 선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승인 공동 결의안 채택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대여나 양도, 수출에 대한 통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방산 수출도 제대로 되고 인접 국가 간의 우호 증진 관계도 유지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정말 외교 차원이든 큰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정해 가지고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영 위원 이게 지금 법안을 보면 전체가 아닙니다.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 그리고 우리가 우호조약이나 다양한 조약을 맺어서 국가 이외의 자, 그러니까 어떤 무장단체나 국가로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국가 이외의 자에 무기를, 전투장비나 탄약 등 군수품을 대여·양도하거나 이럴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우려 사항들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전쟁 중인 데다가 함부로 어느 편을 들어 가지고 살상무기를 만약에 수출해서 그 살상무기로 인해 가지고 내전 중인 어느 한 국가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또 우리 국민에게 해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연히 거쳐야 될 그런 헌법상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통제받는 그런 국회 동의 절차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 저도 기본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 등에게’라고 돼 있습니다. 이 ‘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확대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의 경우를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비전투 장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지뢰 탐지 장비라든지 가장 최근에 간 가장 강력한 게 지뢰 제거 전차인 코뿔소라고 불리는 장애물개척전차 등이 제공이 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면 적시에 제대로 결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또한 방산 수출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양한 국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대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익에 배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이 아마 전쟁이 있는 내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의 군수품이 들어갔을 때 그게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됐을 때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그 접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수출통제법이라는 조약, 무기거래조약이라는 것에 저희가 14년도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거기는 무기 사용이 의심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인 공격, 테러, 기타 등의 무기 사용이 의심이 되는 국가에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목적하에서 그런 것이 되면 이 조약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일단 차단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얘기했던 매우 긍정적인 영향에서의 방산 수출 또 일반적인 지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이 법률에 들어가면 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이익에 배치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양립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허영 위원 한 가지 더 바로잡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에 여기서는 '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이 있는 것은 '전투장비나 탄약 등'입니다. 비전투 장비나 이런 것들은 아예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장비나 탄약, 즉 이 무기 지원을 통해서 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하나 더해서 거기에 '등'이 붙어 있는 것인데 이 '등'에 대한 해석은, 좀 더 비전투 장비나 이런 것들은 예외 조항을 둘 수가 있는 것이지요. '등'은 그런 예외 조항을 위한 것이지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양도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법률안의 취지를 바로잡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좁혀져 있고 정부의 그런 국제조약에 따른 자유로움 같은 것을 해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내전 중이거나 그리고 전쟁 중이거나 이런 국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투장비나 탄약 등입니다. 그래서 전투장비나 그 외의 군수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기존에 해 오던 여러 가지 정부 방침에 따른 지원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차관님,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뢰 제거 장비, 전차형도 있고 일반 차량형도 있고 한데 그 지뢰 제거 장비는 전투장비인가요, 아닌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은 전투장비가 아닙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도하하는 도하 키트는 전투장비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은 전투 지원 장비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지금 전투장비 여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애매모호하거든요. 아예 쓰려면 직접 살상용 전투장비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돼.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군수협정 국가가 총 18개국이 있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17개국……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군수협정 국가를 맺는 것은 전시에 탄약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게 중요한 요소 중에 들어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탄약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탄약이 부족한 것을 받아야 되니까 미리 협정을 맺는 것 아닙니까? 그게 18개 국가하고 맺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필요할 땐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군수협정에.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체결된 국가하고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체결된 국 주게 돼 있지요. 그러면 그것 안 주고 우리도 안 받고 그러고 싸울 수 있나요? 이게 우리가 위급할 때 쓰겠다고 해 놓은 협정 아닙니까?

군수협정 맺은 것은 우리 국회의 동의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은 국회의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동의 다 받은 나라입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아니,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안 받았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동의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동의받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협정을 맺은 나라하고 우리가 탄약을 주고받도록 협정을 맺어 놨는데 그게 다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국제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 국가 외의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군수협정 맺은 나라하고도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게 국회 동의 받지는 않은 곳이기 때문에.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쟁과 내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은 내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곳에서 그것을 또 전쟁이라고 보는 국가들도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내전이라고 보는 국가들도 있고, 그게 국가의 당사자일 수도 있고 사용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가 아닌 특정한 또 다른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쟁과 내전이라는 것의 일상적 개념으로 이것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 모든 군수품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추후에 법적으로 또 상당한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출하신 한정애 의원님의 법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런데 그것들이 충분히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그런 용어 개념, 정의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들이 충분히 다 전제가 되거나 또 이해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신중한 검토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허영 위원 정부 입장에서 그런 신중함을 갖는 건 좋고 군수협정 같은 경우에도, 물론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조약에 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협정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 조약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정부의 어떤 이념적 가치나 정권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군수협정을 맺는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나라에 큰 위기를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군부대, 사람을 파견하는 일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요? 사람은 전투인력으로서의, 그래서 비전투인력에 대한 파병만 우리가 여지껏 허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받았고? 전투인력 자체는 아예 상정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러니까 파병에 관련된 것이 전투파병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합당한 것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전투파병 인력을 우리가 동의받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전투파병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전투인력, 인도적 지원 인력들을 파견해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군수협정을 맺은 나라는 제외를 하더라도 이 전투장비 또 탄약, 직접적인 살상에 관여할 수 있는 무기를 하는 건 더욱더 신중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권을 갖는 것은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모든 걸 다 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이 조문에 해가,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위축될 해 그게 있다면 완전히 살상무기나 이런 것들을 한정해서 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해서 수정 보완해 가지고 이 법은 반드시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이 법이 나오게 된 동기가 지난번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지원했냐 안 했느냐 하는 게 핵심 쟁점이었잖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여러 번 논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 법이 나오게 된 건데, 실제로 현재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잖아요. 무기도 지원 안 하고 비살상 장비만 실제로 지원하는 거지.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뭐 보고 놀랐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의 제도로서도 충분히 억제가 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 법을 만들어서 옥상옥을 더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지.

○허영 위원 살상무기나 탄약이나,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우리가 통제해서 주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전시가 되면, 그러면 다른 나라가 전쟁 났으니까 우리 안 지원해 줘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우린 공산주의하고 싸우는데 우방국에서 지원 안 해 준다. 그리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임종득 위원 같은 맥락에서 제가 첨언을 하면, 사실 6·25 전쟁 당시에 전투병을 파병하고 무기체계들을 많이 지원을 해 줬지요. 16개국 플러스 해 가지고 의료지원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지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어서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전쟁에 대한 정의 자체를 대부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됐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항해서 주변 국가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무기체계를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요 수출도 하고 있고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과 관련돼서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6·25 전쟁 때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생존한 대한민국이 이웃나라가 그 상황이 되니까 손을 놓고 있다라는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법으로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고려하면서 저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4항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제15항,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등 지급 신청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정 이래 동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등에게 보상금 등의 신청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의 법률 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미신청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신청기한은 2019년 11월 25일에 만료되어 신청기간의 연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타 법률에서도 신청기한을 수차례 연장하여 보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상인원이 법 제정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설치해 인력 및 재정이 투입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장기간 신청기한을 설정하는 안과 이전과 같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홍보 등을 통해 보상 신청을 받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신청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국방부는 6개월로 제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급 신청기한 연장에는 동의하고 그걸 5년은 장기기 때문에 6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얼마로 한다고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6개월 연장.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6개월 연장하면 다 해소가 되겠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일단 지금 5차까지 오는 동안 6개월, 12개월 이렇게 연장을 해 왔고, 5년을 만약에 연장하게 되면 좀 고려해야 될 게 보상지원단 운영하고 위원회 운영하는 것들이 5년 동안 예산 집행들이 다 이렇게, 예산적인 면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던 대로 한 6개월 연장해서 추가적으로 받고 만약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 연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 보니까 계속해서 추가 연장을 6개월, 12개월, 31개월 해 왔더라고요. 어차피 법률 개정해 가지고 또 연장하게 될 텐데 그리고 지금 거의 7000명 가까운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고.

저는 충분하게 연장 기간을 둬서 하는 게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계속 이렇게 입법 또 개정하고 개정하는 그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회비용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장 기간을 보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년이 안 되면 3년이라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좀 크게 수용을 해 주시지요.

○유용원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요.

몇 차례 연장했음에도 아직도 6470여 명이 신청을 안 했는데 숫자가 적지 않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그건 좀 파악을 해서……

뒤의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신청 사유?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이분들이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입니다.

대상자 자체가 특수임무수행자다 보니까 대상자 자체는,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했다 보니까 그 유족이, 배우자도 이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자녀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일부 유가족 중에도 신청한 자녀가 있고 신청하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은 호적도 같이 봅니다. 예전에는 4남매, 5남매를 많이 낳았으니까 보면 자녀 중에 한 2명만 신청하고 3명은 신청하지 않은 사례들 이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임무 수행했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저희들은 적다고 보고요.

정확하게 특수임무수행자 단체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유족이나 유가족, 즉 유족이나 배우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단체를 통해서 알려 주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6개월 정도 연장한다고 얼마나 더 추가 신청자가 있을지 사실은 좀 의문시 되는데,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왕 할 거면 5년까지는 어렵더라도 한 1년 이상 이렇게 연장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제가 봐서는 그냥은 안 되고, 우리 훈장 찾아주기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실제로 연장한다고 훈장을 내가 과거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결국은 찾아가서 '당신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특수임무자들 명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을 연장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찾아가면 다 찾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돌아가시고서 유족들이 남아 있으면 유족에게 신청서 들고 가서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적극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우선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북파공작원들인데 북한에 갔다 작전하고 온 사람들 서명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기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으며 본인들이 그걸 소명하고 했는데 진짜 죽을 때까지 말 안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신청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국방부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거에 대한 보상위원의 편성이 얼마나 돼 있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인원이 22명 편성돼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찾아가 보세요. 2000명이면 1인당 100명씩만 담당하면 다 되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인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최초 22명 해서 현재는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이건 찾아가서, 그러면 하다못해 안 되면 알바를 쓰더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법무관리관이 추가적으로 의견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말씀하세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그 부분은 제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위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막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단에서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찾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도 궁금해서, 1만 명이 넘는데 왜 이렇게 그거밖에 안 됐는지. 상당수가 돌아가시고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고 현재 파악한 것으로서는 신청할 수 있는 인원들은 한 500여 명 정도 있다고 내부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인원만, 돌아가셔서 연고가 없다 그러면 정리돼서 끝나고 진짜 유족이 있다 이거는 적극행정으로 하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그래서 인원이 한 500여 명 정도 되고 그 부분 정도의 처리할 수 있는 기간만 부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여기다 1년을 연장한다고 해 놓고 여기다 추가적으

로 토를 달아서 법에다가 이렇게 해요. ‘직접 대면 확인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되지. ‘대면으로써 직접 확인한다’ 이렇게 1년 안에 다 한다 이거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허영 위원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정말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원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다, 대부분 복지 서비스들이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거든요. 열 분의 이런 보상단이 지금 한 500분 정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제가 봐서는 기존 추이로 봐서는 6개월 만에 열 분의 보상단에 500여 분들을 다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발굴주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발굴주의로 가야 조속하게 이러한 것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적어도 1년 이상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그걸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해서 연장 기한을 1년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법률에 ‘직접 대면해서’ 이런 거 하니까 저희들이 보상단 운영을 할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 한 500여 분 되신 분들을 1년 안에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년으로 연장하고 결과에 대한 보고를 국회에 한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문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제16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무원 징계위원회를 군인·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군무원 징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의 자격을 설정하기 쉽지 않고 도서·산간·격오지에 있는 부대일수록 징계위원으로 출석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어서 특정 인원만이 징계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민간위원들 포함하는 문제하고 징계 인원수를 같이 3명을 5명으

로 늘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병사들 징계하는 중대급 이하에 징계위원을 사실 3명도 구성하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그걸 5명으로 늘리고 거기에 민간위원을 넣는다는 것은 민간위원 선발도 어려울뿐더러 지금 적시적인 어떤 그런 징계 절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국방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21대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돼서 당시에도 화악산 꼭대기에 있는 공군 사이트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민간인 어디서 데리고 오냐 그다음 간부가 기장하고 해서 거기 3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더 간부가 없다는 거예요, 병사 징계하려고 해도. 그다음에 함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방위에 있는 GOP 근무 부대. 그래서 중대에서 병사 하나 징계를 하기 위해서 5명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송옥주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데 똑같은 부분을 왜 또 내셨나 모르겠네. 이거는 안 된다고 그때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도 보면 징계를 할 때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병사도 아니고 군무원이잖아요. 군무원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한다라든지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좀 민간위원들이 1명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면 이게 물론 군의 징계를 신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무원인사법이기 때문에 군무원들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악산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상급부대에서 징계위를 열면 이 요건은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법률안에 보면 약간의 그런 모든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법률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조건에서든지 다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다 돼야 되거든.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거를 수용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도 이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 하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의도라면 그런 특정한 경우들을 다 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실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앞에 이제 군인사법은 병 징계위원 3명 5명으로 이건 좀 현실적으로 제한이 되는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려 한다고……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아, 하신다고요?

○임종득 위원 군무원 징계와 관련돼서 민간, 물론 하면 좋지요. 좀 더 공정할 수도 있

고 좋은데 군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한이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게 징계를 해서 징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열려 있어요.

○허영 위원 상급부대에 있나요?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징계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하면 소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다 있는데 이걸 법으로 규정하는 순간 낭비되어지는, 낭비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마는 소요되어 준비하거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군무원을 징계하려거든 군무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해라 이 얘기는 충분히 얘기가 돼요. 그다음에 부사관을 징계한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부사관 1명은 반드시 포함해라 이러면 그게 된다고.

○임종득 위원 그럴 수 있지요. 실현 가능하지요, 그거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인원을 5명으로 넣어라, 민간인을 넣어라 이러면 이것도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그런 요소를 감안해서 군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군무원을 징계한다 그러면 군무원 그 사람보다 상위 직위의 군무원 1명을 포함해라 그러면 밖에서 꿔다가라도 갖다 놓고서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영 위원 이해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이건 좀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의사진행발언하십니까?

○부승찬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두 번이나 했었는데요, 정식으로. 항상 끝날 때까지 합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김병주 위원이 저보고 이거 다 해 달라고 했는데.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18항,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유용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통사항이 있

어서 병합 심사 대상입니다.

먼저 유용원 의원님께서 군인의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확대와 관련된 개정안을 내셨고요. 정부제출안은 이것 포함해서 군인의 성 비위사건 징계시효 연장 3년에서 10년,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인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군인에게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양이나 돌보기 위한 휴직을 허용하여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 군무원 모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확대된 가사휴직을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하였습니다.

징계시효 연장과 관련돼서는 군인의 성 비위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형평성 및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 관련 명예퇴직수당 환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대상자가 행방불명, 구속된 경우 등에는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하여 징수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추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유용원 의원님 발의하신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정부에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성 비위사건과 관련된 것에 대한 징계를 엄중하게 하기 위해서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고 지금 군에서 환수해야 되는 이런 것을 할 때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위탁기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법률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갑자기……

그런데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공무원, 군무원 여기 휴직이 나와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휴직을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오늘 김병주 위원이 못 하기 때문에 저보고 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하는데 군인은 휴직을 해서 가면 그 자리 누가 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현재는 대체인력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그 업무를 할 사람이 없으면, 현역 군인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아마 업무가 분산돼서 다시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돌봄휴직 이런 것을 할 때 군인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확보를 못 합니다. 군인이 어디 있어요? 남는 군인이 없거든. 이거는 단서조항을 붙이지 않으면 안 돼요. ‘휴직하되 부수인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해 놔야 돼요. 아니면 ‘대체인력을 확보한다’. 대체인력 없이 휴가는 마음

대로 보내 줘라, 안 된다 이거야.

차관님, 차관님도 군대 생활하셨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데 법률 안에 휴직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명기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인력 운용 차원에서 그걸 할 것인지는 한번 더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거는 차관님한테 맡기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 휴직자에 대한 인원을 확보한다고, '부수인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부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좀……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노력한다'가 안 돼, '확보한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운영위에서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법에다 넣지.

○임종득 위원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내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육아휴직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군들이 오는 걸 되게 꺼려 하는 분위기들이 야전에 좀 많이 있거든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아니, 야전은 지금 난리라니까요.

○임종득 위원 그 부분이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수인력을 넣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차피 그 부대에서 누군가는 그 업무를 셰어(share)해야 되거든요. 그 셰어하는 사람을 지정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간, 업무를 인계받아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지금 20만 원씩 줘요.

○임종득 위원 아, 줍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예.

○임종득 위원 지금 그걸로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제가 내용을 다 알지요. 20만 원을 안 받고 안 하겠다는 거거든.

○임종득 위원 그러면 좀 더 줘야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지금 학교 선생님이 휴직을 해서 가잖아요. 즉시 채용합니다. 채용해서 그 자리를 메꿔 줘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수학 과목을 누가 대신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 공무원도 이렇게 다 해요. 군인만 안 해요. 군인은 왜 안 합니까?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안 합니까? 그래서 부수인력을 확보하라는 것을 법에다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해 놓으면 이것 때문에 법사위 가서 얘기가 있겠지요. 그래서 국방부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만일에 육아휴직을 했을 때 그 대체인력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하면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휴가를 확장하는 것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매우 쉬운 상황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 법률안의 본질은 이런 휴직을 좀 확장시켜서 그런 여건을 보장해 주자는 건데 대체인력을 확보 못 해서 그것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

는, 약간의 충돌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과 이걸 좀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제가 행안부장관에게 군의 실링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지금 우리 군에서 휴가를, 육아휴직을 가라고 해도 못 간다. 왜? 내 임무를 누군가 수행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그 휴가 가는 사람이 결국은 '저 놈이 가' 이래 가지고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본인도 못 간다 이걸 해소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의원님,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 국회의원도 이걸 노력 안 하고 국방부도 노력 안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노력한다'로 넣어요?

○유용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부수인력 확보 노력을 한다?

○유용원 위원 같은 여당 의원이 냈다고 위원장님은 안 봐주세요. 공정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인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이거 설명 안 했지요?

○허영 위원 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군인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이거 아까 설명했나?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예, 설명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이거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명예수당 이것도 이의 없으시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 결정을 하고 가셔야……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위원장님, 17·18항 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7쪽 하단에 지원과 관련돼서 유용원 의원님안은 '대통령령 등'으로 돼 있고 정부제출안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군인사법은 대통령령 외에 하위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제출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옳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예, 대통령령으로 하겠습니다.

19항 끝났지요?

○허영 위원 19항 안 끝났어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19항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끝났지.

○부승찬 위원 19항은 군인사법입니다, 인사법. 아까는 군무원 인사법.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군무원이고 이거는 군인사법, 다르구나.

19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 아니, 17·18항……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아까는 군무원이고 19항은 군인사법. 19항도 군무원 인사법 하고 똑같거든요.

○임종득 위원 내용은 같은데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내용은 같아요.

○부승찬 위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법에도 5급 이상은 중앙징계위에 가고 5급 이하는 보통징계위 가듯이 군무원도 마찬가지고 군인 장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종득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런데 어마어마한 인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임종득 위원 지금 병사들하고 간부들의 계급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지는 기간이 달라져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지연되는 건데 이 부분은 다시 해 봐야 돼요.

다음 20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이거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는 것인데요.

검토보고 요지는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하여 진급된 계급에 따라 각종 급여 및 예우를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군인사법보다는 군인재해보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봤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동일한 내용의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인재해보상법을 다시 추가적으로 냈기 때문에 이 법은 아예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21항.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21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인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외 거주 군인에게 작전이나 훈련 중인 경우에는 현물과 함께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작전·훈련 등의 경우 사실상 영내급식이 강제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작전·훈련 등에 참가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영외 거주 간부의 급식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타당한 면은 있습니다만 현물과 현금을 같이 지급할 수 있다는 개정안 제53조 제3항은 현행 군인사법 제53조의 실비변상 조항과 법체계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며 기존 영내급식 인가간부는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의 형평성 문제, 국가공무원은 대통령령에서 정액급식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법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개정안 입법

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차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현물과 현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은 급식을 제공받거나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면 급식비를 지원받는 이 둘 중의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옥주 의원님이 제기한 것은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간부들이 받는 급식비가 13만 7000원인데 이거를 한 끼당 계산할 때, 병급식하고 했을 때 급식비가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급식은 한 끼당 한 4000 얼마가 되는 것이고 간부는 13만 7000원으로 나누게 되면 한 1000 얼마가 되니까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국방부는 간부훈련급식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보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급보다는 그런 급식비를 가지고 이걸 보전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전액이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국방부가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가 안 된다니까요. 예결위 간사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서 차관님이 확실히 얘기할 게 있어요. 우선 간부들이 영내에서 먹는 것을 돈으로 환불을 하게 할 거냐 아니면 먹을 때마다 식수인원으로 잡아 줄 거냐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영내에서 밥을 먹는 것을 전부 식수인원으로 잡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점심 한 끼분은 나가잖아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일찍 근무를 하면서, 장관님한테도 제가 직접 받은 문자를 보내 드렸는데 일찍 근무를 한 군무원이에요, 군무원. 군무원이 자기는 아이들 밥 먹는 거 인솔해 주고 와서 컵라면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눈치가 보여서 밥을 먹을 수 없다. 이런 환경을 누가? 국방부가 만들었다니까요. 컵라면을 와서 먹는대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찍 근무한 자는 군무원이든 군인이든 급식인원으로 잡는다. 그리고 그걸 예하부대 공문으로 지시하면 돼. 잡는다 그리고 이미 급식비를 낸 걸로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서 하달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계산은 나중에 국방부가 하면 되는 거고. 이걸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인식하는데 여기도 이중지급 문제가 나오는 게 당직근무자들은 저희가 당직근무비를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부들이 당직근무비를 지급받는 것은……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당직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그거 밥값으로 준 거 아니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공무원들이나 관계관들이 당직근무비를 받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함의하고 있거든요, 식비하고 근무비나 이런 것들을.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국방부가 우리 예하 장병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당직근무했다고 고생했다고 했으면 됐지 그걸 밥값을 떼어 내라고 하니까 바보 같지 않

아요?

기재부, 예를 들어서 1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으면 밥을 몇백 명이 먹는데 거기 당직근무한 사람 급식하는 게 불법이에요? 옛날에는 급양감독이라고 그래서 다 가서 먹었잖아요. 밥값을 별도로 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이 문제는 현재 지금 24년부터 저희가 예산이 한 130~140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훈련간부 급식 지원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저희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허영 위원 심의 과정에서 검토를 한다고요?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저희가 지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여기 지금 예결위 간사님이 앉아 있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죄송합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당직수당이 지금 다른 경찰이나 소방공무원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현격하게 한 두세 배 정도 덜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밥값을 떼.

○허영 위원 밥값을 또 떼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당직비는 저희가 그 재원 여건 내에서 최대한 작년에 2배로 인상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이게……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아니, 그러지 마세요. 작년에 제가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만 원, 2만 원이라서 국방위원회에서 난리를 쳐 가지고 2만 원, 4만 원으로 했지 기재부가 올린 것 아닙니다, 국회에서 올렸지. 기재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초급간부들이 군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당직근무비가 얼마입니까, 군인들? 내년도 당직근무비가 얼마예요, 군인들?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2만 원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니까 작년에 올린 것 2만 원, 4만 원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밥 두 끼분 또 떼지요? 저녁하고 아침하고 먹어야 되니까. 또 계속 근무하면 점심까지, 그러니까 세 끼분 떼어야지요, 2만 원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야. 밥 먹는 것을, 당직근무자를 국방부가 급식 인원으로 잡아주면 그러면 당직비에서 안 뗀단 말이에요.

아니, 차관님, 그것도 못 하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사실 작년까지는 그게 적용이 안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급양 감독 등 별도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급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행이 그렇게 조치를 해서 걱정되지 않도록……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다음에 간사님, 이번에 당직근무비 3만 원, 6만 원으로 올리시지요, 허 위원님?

○허영 위원 하여튼 핵심 사안으로 다뤄 볼 생각이고 노력할 겁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여당 간사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고 저도 할 테니까

3만 원, 6만 원으로 올해……

○임종득 위원 밀어 봅시다.

○유용원 위원 예, 하지요.

○허영 위원 그것 안 하면 예산 통과 안 시킬 겁니다.

○유용원 위원 안 시킨다고……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허 위원님 공로로 제가 선전할 테니까.

○유용원 위원 액수가 많지도 않더라고요. 이백사십 몇 억인가 그것만 더 증액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요. 이것은 상정하지 않고 차관님이 급양 감독의 임무로서 식사하는 것으로 급식 인원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고 돈을 떼지 말라 이거야, 밥값을.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다음에 저하고 허 위원님하고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3만 원, 6만 원으로 반영하는 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불만 있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없습니다.

○유용원 위원 저도 차관님께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정말 소탐대실입니다. 소탐대실하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제18항, 이상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19항·제20항·제21항 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이것 지금 수정한 것은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하기 전에 예결 심의 위원들은 한 부씩 다 드려야 돼, 수정해 가지고. 안 드리고 그냥 하면 안 돼.

○행정실장 신세민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다음, 의사일정 22항·23항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22항·23항, 송옥주 의원님과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 병합 심사하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폭염·한파 등 기상법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훈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밑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논의사항이 있는데요.

논의사항 1을 보시겠습니다.

부대활동은 작전임무수행뿐만 아니라 부대관리, 교육훈련, 대민지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행위가 외부와 내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전임무수행을 기준으로 나누기보다는 박정 의원안처럼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논의사항 두 번째로 현행법에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의무와 병영생활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실시 주체를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박정 의원안처럼 국방부장관이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기준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다는 점과 군인에 대한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조치는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박정 의원안처럼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훈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국방부는 박정 의원님이 제시하신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런데 이게 채 상병 사건 때문에 나온 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훈령이 부족해서 일이 생긴 거예요? 국방부, 똑바로 대답하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훈령이 부족해서 그것이 생겼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여기 지금 41쪽에 명시해 놨잖아요. 41쪽에도 재난 분야 대민지원할 때의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을 자꾸 만든다고 법의 과잉생산이 돼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훈령에 없으면 훈련해 보고 하면 되지 지금 국방부와 관련돼서 전부 다 법으로 만든다면 그게 타당합니까?

저도 야전 지휘관을 하고 부대 훈련하고 다 했지만 기온이 올라간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하고서 훈련을 해야지 안 하면 전쟁하다가도 35도 이상 올라가면 전쟁 안 하고 휴전합니까, 차관님? 그 기상 조건에 맞는 조치를 하고 해야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과잉이라고 생각돼요, 과잉. 여기다가 박정 의원이 그랬잖아, '1항 및 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훈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훈령이 그러면 없냐, 훈령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딱 명시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7조, 박정 의원님이 얘기한 '지휘관은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것을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국방부장관은 폭염·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안 해요? 훈령에 없어요?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지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훈령을 지금 법으로 만들자는 거거든.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훈령이나 지침 이런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마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을 법률로 좀 정해 놓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 의원님께서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국방부 훈령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고 하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훈령에 있는데 뭘 또 정한다고 말을, 법을 왜 만드냐 이거야. 차관님, 좀……

○허영 위원 위원장님은 왜……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예결위원장님을 하시니까 좀 겁먹고 그러시는 것 아니야?

○허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예, 말씀하세요.

○허영 위원 이게 안전매뉴얼에 있는 것하고 법이, 저도 박정 의원안에 동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폭염이나 한파는 새로운 기후 재난으로 규정되어서 근로기준법이나 또 각종 재난, 안전법에 폭염 규정들을 상위법에 놓고 있는 그런 법적, 입법 추이입니다.

그리고 안전매뉴얼에는 기상특보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그러니까 폭염과 한파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명확하게 법상 기상특보라고 하는 기상법에 따른 폭염과 한파의 재난 기준들을 법이 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부대 훈련 과정 속에서 폭염·한파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의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폭염·한파를 재난의 기준에 넣고 또 그것도 기상법에 따른 기상특보에 따르게끔 해서, 기상특보에 따르면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지휘관들의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군부대에 있어서는 명확성의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입법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예.

○임종득 위원 지금 훈령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법령으로 바꿈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보자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아마 이 발의를 해 주신 두 의원님의 의도는 아까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상변화에 대비해서 장병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 중요성하고 또 이것을 좀 그렇게 하신 것은……

○임종득 위원 아니, 지금 훈령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조치 매뉴얼들이 되어 있고 기상변화에 따른 경보가 되어지는 때에 따라서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령으로 만듦으로 해 가지고 달라지는 게 뭐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명확지 않으면서 법령이 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게 잘못되면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이든 상관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 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들이 상당

히 많이 일어남으로 해 가지고 지휘권에 많은 위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 훈령의 범위를 가지고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법령으로 만드는 이익이 뭐냐는 부분이 저는 잘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제가 봐서 차관님이 이게 예결위원장님 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훈령에다 명시가 되어 있고 구체화돼서……

보세요. ‘한파(귀마개, 장갑, 보온대, 온열조끼 등), 폭염(얼음물, 아이스팩, 아이스 스카프 등) 대비 장비를 휴대한다’.

○임종득 위원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아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훈령에 또 명시한다 해 놓으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한파(폭염) 시 난방과 냉방 대책이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추위 및 더위로 인한 질병 증상 및 대처방법 사전에 숙지한다, 외부활동 시 장병 건강상태 수시로 확인하고 의료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써 놨어요.

○임종득 위원 간부라면 당연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게 아니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법의 과잉생산이 된다니까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래서 지금 저희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송옥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은 아마 위원장님하고 임종득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들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데 박정 의원님 발의안은 그런 제반 사항들을, 거기 법률사항에 명시된 것은 사실 훈령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아니라 상당히 일부분을 했고 나머지는 국방부 훈령에 정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알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제가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감사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이것은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4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24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권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을 명시하고 군 내부 진정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사 및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군 대외기관을 통한 구제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진정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보장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군인의 기본권 보호 수단을 강화하고 2차 가해의 예방 및 적극적으로 진정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권상담관과 같은 진정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부대는 이러한 구제 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국방부와 각 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보다 포괄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관 의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한 것은 국방부와 군의 자정 노력과 별도로 국가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원회의 감독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함에 따른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여기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 진정의 규정 및 기본권 침해의 조사·구제에 관련된 것은 사실 인권상담관 법무장교들이 편성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에 있는 '모든 부대·기관'이라는 표현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각 부대·기관의 장'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차관님, 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대표발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의원님……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안규백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 법을 발의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때 제일 첨예하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인권위원회의 군 인권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국방부에서는 요구한 게 국방부에 직접 갖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에다 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국회에다 주자,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에다 주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한 게 인권위원회에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얘기하는 건……

이거 어디에다 만들어요, 만들면?

○국방부차관 김선호 군인권보호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렇지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아마 부대 자체적으로 있는 인권상담관에 의한 구제 활동 이것들이 아마 고유에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좀 침해한다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래 이 입법을 한 취지하고도 안 맞는다고 하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국방부

가 이거 추진하실 거예요?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부승찬 위원 어찌 됐든 국방부로 갖고 가느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인권위에 두느냐, 혹은 국회에 두느냐 논쟁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가인권위에 두는 걸로, 그것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군의 지휘권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인권을 다루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이번 채 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군인권보호관의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국가인권위에 두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또 바꾸려고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안규백 위원장이 발의하신 법이 또 있잖아요, 국회에 두는.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차관님께 감히 말씀드리는 건 국방부에 두는 거는 국방부의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허 위원님 없어요? 의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허영 위원 아니, 이게 국방부에 두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래서 제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방위적으로 하는 거를 제한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뭐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군인권보호관은 최초에 된 대로 권익위에 두는 것을 김병주 의원님 발의하실 때 그대로 넣은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좀…… 되는 것입니다. 각 부대가, 모든 부대가 인권 관련된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는 것인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하는데 인권상담관, 그러니까 법무장교들이 없는 제대에 있는 모든 부대들이 이걸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법무장교들이 편성돼 있는 부대들,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에서는 인권상담관이 이 관련된 인권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권익위가 국방부가 자체적인 인권 구제 활동을 또 하게 되면 고유에 갖고 있는 권익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의 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이 다르거든.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인권단장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영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이 법의 취지는, 이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훈령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법으로 상향시키는 건데요. 그런데 군인권보호관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과거에 훈령으로 해서 군인권업무의 진정을 받고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법으로 상향되면 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 다른 기관에서 진정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인권위에서 같이 처리할 수 없어 각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생긴 군인권보호관이 아직 정착이 되고 하기 전

에 각하되는 대상이 생기게 되면 기능이나 역할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에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되고 또 인권위와 저희 간에 이게 위축되지 않도록 뭔가 좀 조정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인권위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보호국장 박홍근 군인권보호국장 박홍근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입니다. 기존에 국방부나 군부대 내부에서 진정 처리 절차를 해 오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상 어떤 권한으로 올라가면서 인권위법상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권위법 제32조에 의하면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 중에서 열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각하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서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반드시 각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방부나 군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것이 어떤 법상 위상을 갖게 되면 이 5호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더라도 반드시 각하해야 되는, 원칙적으로 각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군 외부의 어떤 외부통제 기능을 갖게 만들었는데 군 내부에서 먼저 처리를 하게 되면 인권위는 더 이상 원칙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질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하기보다는 좀 더 심의를, 인권위원회하고도 조율하고 국방부 안에서도 다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제25항 유용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기훈련 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 및 정신상태를 고려하여 수행 역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혹한 군기훈련에 대해 군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가혹한 군기훈련 실시 시에 실시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군기훈련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휘관이 군기훈련 강도를 결정할 때 지나치게 신중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필요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수행 역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라는 규정은 그 표현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실제 현장에서 규정을 적용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인한 상해 등이 발생했을 때 동 규정의 해석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아마 자료를 별도도 갖고 계신가요?

○허영 위원 정부안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예.

다만 유용원 의원님이 군형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해서 직권남용이나 위력 행사 등에 따른 죄에 대해서 법정 벌칙을 규정하는 군형법이 연계돼 있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바꾸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 개정안에 대한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개정안 내용에 보면 '수행 역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시행해야 되는 제대들이 보면 매우 낮은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시행함에 있어서 다소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훈련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개인 수행 역량에 맞는 군기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개정안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지금 정부에서는 유용원 의원님 안하고 이거를 조금 달리 표현을 했지요. 수행 역량에 맞는, 유용원 의원님은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유용원 위원 제 의견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예, 위원님.

○유용원 위원 정부에서 우려하는 바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정부 측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런데 군형법 개정안이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 법으로 하면 지난번 인제 사건은 3년 이상에 해당되네?

법무관리관님!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현재는 이러한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떤 정도 형벌을 받아요, 지금은?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지금 현재로서는 직권에 의한 가혹행위 또는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그게 아마 5년, 3년이든가 그 정도고 그 이상의 어떤, 여기에서처럼 상해라든지 사망에 이른다든지 그런 특별한 어떤 추가적인 법정 범죄 형태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용원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거고요.

또 유용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체계상 형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우리가 심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참고로 물어본 거예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유용원 의원님께서 국방부 안에 동의한다라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이 법안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개정이 이렇게 됐을 때 교육 훈련을 지금 현장에서 시키고 있는 초급간부들에게 미칠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안에 나오는 '수행 역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 이것 판단 못 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이걸 지금 법에다 만들어 가지고 3년 이상의 징역을 이야기하면 간부 안 하겠다고 그러지요. 나라 그래도 안 하겠다고 그러겠네. 지금 안 그래도 초급간부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 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어떤 사망 사고도 있지만 사망 사고에 이르지 않는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각급 부대에 초급간부들이 근무하고 있는 야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생각하면서 저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법이 과잉이냐 아니냐, 그 법에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걸 자꾸 따지는데 사실 지금 병사들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법으로 만드는 게…… 저는 그래서 훈령에 있으면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 자꾸 훈령을 법으로 격상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형법이 이미 벌써 법사위에 갔는데 법사위에서 센 걸로 선택을 하겠지요, 약한 것보다는. 이게 이제 앞으로 군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요. 누가 하겠어요? 안 하고 말지. 그래서 과잉해서 하는 게 잘될 것 같지만, 그것 겁 먹고 안 할 것이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다니까요.

제가 초급간부들한테 가서 얘기 들은 것을 차관님한테도 직접 말씀을 드렸지만 오죽하면 초급간부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병사들이 시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심각한.

○임종득 위원 추가적으로 말하면 지금 초급간부 복지, 월급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초급간부들의 불만이라든가 우려 부분들은 그 외의 것이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 부하들을 지휘하고 훈련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이런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빼앗아 버리거든요.

만약에 이 법안이 된다 그러면 후속적으로 나타날 문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훈련 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한다고 현재 되어 있는데, 훈련 대상자의 훈련이……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니까요.

○허영 위원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얘기하세요,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모호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훈련 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라고 하는 명확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또 형법상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이 나왔기 때문에 법은 현행법대로 가되 형법…… 만약에 이런 것에 여러 가지 간부들의 오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의 처벌규정으로 제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현행법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유용원 의원님이 모처럼 법안 발의한 게 현행대로 그냥 가자고 그러면……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6항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60쪽입니다.

2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했습니다.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정당 및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한바 이에 따라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정당 및 정당의 조직 등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환경단체 등 활동 범위에 따라 정치적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을 규율할 수 없다는 입장과 군인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혹은 지위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입장 차이를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취지는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현재 개정안에 들어 있는 그 밖의 단체는 다섯 개 정도로 규정해 놨습니다. 정당의 조직 그다음에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그다음에 선거운동기구,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 이렇게 그 밖의 단체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위헌결정에 따라서 논쟁이 되지 않도록 다섯 가지로 정확하게 규정해서 법률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허영 위원 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도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판단은 명확성의 원칙을 이렇게 단체를 몇 개로 해 가지고 좁혀서 하라는 취지의 위헌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진 사례에서도 이렇게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사례가 거의 극히 드뭅니다. 다 허용을 하고 있고 다만 교단에서의 선생님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또 그런데 선생님들 자체는 정치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됐는데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두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은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섯

개의 사유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드려서 이것은 계속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차관님,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법으로 나온 게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해서 '막연하다' 이렇게 지적한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막연한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맞췄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공무원들 것은 법이 완성됐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안 됐습니다.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인사기획관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공무원 것도 아직 안 됐어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예,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통과 안 됐어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면 이것 공무원법 통과된 다음에 합시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불만 없으시지요?

27항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제27항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안은 군인의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병사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고 있지 않으나 현역병은 토요일·공휴일이 휴가일수에 산입되는바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가기간에 토요일·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기에 형평성 측면에서 현역병에도 적용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을 휴가일수에서 미산입하게 되면 평일의 군대 내 병의 휴가일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군 임무 수행 시 인력 공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국방부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은 간부와 병의 복무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다시 정의를 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대략 판단해 보면 병사들의 휴가일수는 지금보다 한 세 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아마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간부하고 병하고도 있겠지만 현역으로 있는 병사들이 휴일도 GP, GOP 전부 근무하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래서 휴일이라고 별도로 병사에게 휴일로 산정해서 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휴일을 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영내에 있는 병사들도 휴일 날에 아무것도 시키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휴일 날 영내의 GOP, GP, 레이더 사이트, 공군 방공기지고 전부 다 근무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은 휴일도 근무일수로 봐야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근무 안 서는 자에게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허영 위원 그런데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 요일에 쉬지 않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은 정상적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허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원칙은 간부가 휴일에 산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일반 병사들도 산입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휴가제도의 운영 원칙을 잘 조절해 가지고 급격하게 휴가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해야지 이런 근본적인 차별을 두게 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은 복무에 대한 이해가 좀…… 설명을 드리면 병사들은 병역법에 입영과 동시에 군부대에서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그들은 기본적인 복무의 형태고 간부들은 영내에서 대기를 하려면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대기를 해야 되고 영외 거주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휴일에 있는 것들을 동일선상에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복무의 특성과 차별성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나중에 고민하시고 이것은 안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계속 심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예.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23항, 이상 2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해 정리한 것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7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28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정부 제출 법안입니다.

국방위원회 소관 개별법에 따른 상설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재 상설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탄력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정책 결정의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마지막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난 3년간 개최 실적이 7회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기를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정부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정부조직 운영과 관련해 있어서 지금 법률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지만 최근 3년간 운영 위원회 실적을 봤을 때 1회 내지 전혀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 같은 것들은 정리를 하고 상설로 되어 있는 것을 필요시에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고,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 마지막에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그 위원회는 유지를 하고 나머지 4개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면 이것을 만든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면 모법이 상설위원회로 두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제가 각 모법 확인을 못 했는데 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방부기획관리관 김경욱 기획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법률에는 기본적으로는 '둔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설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비상설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니까 모법하고 충돌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국방부기획관리관 김경욱 이 법을 개정하면서 모법이 같이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위원장님, 그 5개 법률을……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법무관리관님.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5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문제가 없다?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의를……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따라서 저쪽이 바꾼다?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해당되는 5개 법률의 상설위원회로 둔다는 그 규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지금 이게 각각의 법률안에 있는 위원회인데 이 각각의 법률안을 바꿀 때 6개의 법률안 개정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통합된 것은 하나의 법률안으로서 다 개정안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문제가 없다는 거지, 지금?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국방부기획관리관 김경욱 법 제명 자체가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허영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여기는 뭉뚱그려 다 써 놓았지만 5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국방부기획관리관 김경욱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그러니까 모법이 걸리는 게 아니고 모법을 이렇게 고치는 거다.

위원님들, 없으면……

○허영 위원 아니, 있습니다.

국방개혁위원회,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이게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상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비상설위원회로 해서 행정 편의성을 도모한다. 그런데 열거한 위원회는 그 이름 자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하고.

오늘도 법안 심사를 했지만 군공항 이전 관련되어 가지고 수원, 광주, 대구 등등 아직까지도 현안 사업으로 지자체와 정부와 또 국회에서 이전 논의에 대한 법 제정과 지원 부분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 또 향후에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소요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편의에 따라 가지고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국방개혁은 끝났는가? 그리고 군보건의료발전 이 부분들도 비상설로 전환할 만큼 위원회의 임무가 거의 끝났는가? 저는 그렇지 않고, 개최 실적이 부족하면 법이 정한 취지에 따라 가지고 개최 실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문제지 이걸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차관님, 위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상설과 비상설로 운영할 경우에 차이가 뭐가 있는지 설명하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상설로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된 위원님들이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위원님들이 계속 그 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유지가 되고 비상설로 되면 그 사안에 맞춰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국방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상설로 운영돼서 하는 것이 국방혁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국방 혁신과 관련된 것은 그 위원회에서 있고.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

○국방부차관 김선호 군공항이전사업선정위원회라든지 지원위원회 이런 것들은, 사실 지원위원회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회 말고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제기가 안 됐고 나머지 군보건의료추진위원회·군복지위원회 이것은 관련된 법규들을 한 5년마다 한 번씩 정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들이 굳이 상설위원회로서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식의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알았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허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고 정부 측 의견도 이해하는데 다음에 다시 심의할 때, 가져올 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국방개혁위원회는 이름을 혁신위원회로 바꿨다 하면 위원 구성한 거라든가 이걸 명시해서 큰 차이가, 임무하고 이름만 차이가 있다 이럴 수 있고.

군공항 이전은 제가 있을 때 만든 건데 군공항 이전 부지를 하다가 이전하는 것 하니까 거기에 지원을 뭐 할 건가 그걸 별도로 또 하라 그래서 이것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위원회별로, 6개를 전부 다 뭉쳐 놓으니까 무성의해 보인다 이거예요, 만들 때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허 위원님, 이의 없지요?

○허영 위원 예, 이의 없는데 국방혁신위원회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상에 있어서 법정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속 조직이지. 이게 법률로 국방개혁위원회를 둔 것은 그런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활동 실적들이 국회에 보고되고 국회와 행정부의 원활한 업무 시스템을 위해서 만든 거지, 대통령 직속으로 혁신위원회 한 것은 대통령을 위한 혁신위원회지 그게 국회를 위한 혁신위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아닙니다. 국방부가 주관하던 위원회를 상위제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신 대로 위원회별로 운영과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오늘 32항까지 하려고 했으나 5·18 포함해서 4개항은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검토할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로 하고,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토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시 소위원장이 이렇게 과도하게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의 차관님과 그리고 함께 와 주신 법무관리관님 그리고 실국장님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부승찬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 허 영

○청가 위원(2인)

김민석 김병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김선호

법무관리관 홍창식

기획관리관 김경욱

인사기획관 오영대

보건복지관 김은성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물자관리과장 심나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훈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강정화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국장 박홍근